

• 소통의 연수 • 통합의 연수 • 안전한 연수



연수구보



발행 · 편집인:연수구청장 / 발행처:인천광역시 연구구 / 주소:인천광역시 연구구 원인재로 115 (우)21967 ☎ 749-7392 / FAX 749-7399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부록 제1335호 2022. 10. 12.(수)

【조 례】

- 인천광역시 연구구 조례 제1456호(인천광역시 연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1
- 인천광역시 연구구 조례 제1457호(인천광역시 연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6
- 인천광역시 연구구 조례 제1458호(인천광역시 연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21

【규 칙】

- 인천광역시 연구구 규칙 제760호(인천광역시 연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26
- 인천광역시 연구구 규칙 제761호(인천광역시 연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102

【훈 령】

- 인천광역시 연구구 훈령 제332호(인천광역시 연구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 109

【공 고】

- 인천광역시 연구구 공고 제2022-1494호(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131
- 인천광역시연구구의회 공고 제2022-17호(인천광역시 연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9
- 인천광역시연구구의회 공고 제2022-18호(인천광역시 연구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안) 152
- 인천광역시연구구의회 공고 제2022-19호(인천광역시 연구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73
- 인천광역시연구구의회 공고 제2022-20호(인천광역시 연구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0
- 인천광역시연구구의회 공고 제2022-21호(인천광역시 연구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9

회							
람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p>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p>	<p>1. 제안이유</p> <p>○ 민선8기 구정 운영방향을 반영하여 일자리와 예산, 주민생활 밀접업무, 도시기반시설 업무 우선배치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기구 개편</p> <p>2. 주요내용</p> <p>○ 국 명칭 및 직제 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안전국 ⇨ 기획경제국(제4조) - 주민복지국 ⇨ 복지환경국(제5조) - 경제환경국 ⇨ 도시교통국(제5조의2) - 도시관리국 ⇨ 자치행정국(제6조) <p>○ 교육문화자치국 폐지(제4조의2)</p> <p>○ 사업소(연수청학도서관) 신설 (제2조, 제10조 ~ 제12조)</p>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이 재 호

2022. 10. 12.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456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직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 기관”을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으로, “실·단·과”를 “단·실·과”로 한다.

제3조 중 “행정안전국, 교육문화자치국, 주민복지국, 경제환경국, 도시관리국, 기획예산실, 송도관리단, 감사실, 홍보미디어실”을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도시교통국, 자치행정국, 송도관리단, 비전전략실, 감사실”로 한다.

제4조 제목 “(행정안전국)”을 “(기획경제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

- ① 기획경제국에 기획예산과, 경제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재무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를 둔다.

제4조의2를 삭제한다.

제5조 및 제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복지환경국) ① 복지환경국에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출산보육과, 청소행정과, 위생정책과, 환경보전과를 둔다.

② 복지환경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의2(도시교통국) ① 도시교통국에 건설과, 건축과, 도시주택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공간정보과,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를 둔다.

② 도시교통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자치행정국) ① 자치행정국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관리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홍보미디어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② 자치행정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4”와 같다.

제7조제2항 중 ““별표 6”과”를 ““별표 5”와”로 한다.

제4장(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을 제5장(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으로 하고, 제9조 다음에 제4장(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사업소

제10조(설치) ① 법 제127조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에 사업소를 둔다.

②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관할구역은 “별표 6”과 같다.

제11조(사업소장) 사업소에 소장 또는 관장(이하 “사업소장”이라 한다)을 두며 사업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조(업무) 사업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2를 삭제하며,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를 각각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로 하고, 별표 2(중전의 별표 3)부터 별표 4(중전의 별표 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며,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상황실란 중 “행정안전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재정지원반란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하며, 홍보·전산지원반란 중 “홍보미디어실장”을 “홍보미디어과장”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제3호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교통국장”으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규제개혁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3항 중 “기획예산실장” 을 “기획예산과장” 으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제3항 중 “기획예산실장” 을 “기획예산과장” 으로 한다.

⑧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2항 중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예산실장” 을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 총괄부서의 장” 으로 한다.

⑨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기획예산실장” 을 “예산 담당 부서의 장” 으로 한다.

⑩ 「인천광역시 연수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 을 “기획예산과장” 으로 한다.

⑪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3항 중 “기획예산실장” 을 “기획예산과장” 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홍보미디어실장” 을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 으로 한다.

⑫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연수구 주관부서란 중 “평생교육과” 를 “교육지원과” 로, “위생과” 를 “위생정책과” 로 한다.

별표 5의 비고란 중 “홍보미디어실”을 각각 “홍보미디어과”로, “자원순환과”를 “청소행정과”로 한다.

⑬ 「인천광역시 연수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5호 중 “평생교육과”를 “교육지원과”로 한다.

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도서관업무 담당 국장”을 “대표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구청장”을 “관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구청장”을 각각 “관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구청장”을 각각 “관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중 “구청장”을 각각 “관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을 각각 “관장”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 중 “구청장”을 각각 “관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구청장”을 각각 “관장”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구청장”을 “관장”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제5호 중 “구청장”을 “관장”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중 “구청장”을 각각 “관장”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구청장”을 “관장”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구청장” 을 “관장” 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을 “()도서관장” 으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을 “()도서관장” 으로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을 “()도서관장” 으로 한다.

【별표 1】

사 무 분 장 표 (제 4 조 관 련)

국 명	분 장 사 무
<p>기획경제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구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2.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편성 및 배정에 관한 사항 4. 중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 5. 구 법제 행정의 종합기획에 관한 사항 6. 구 의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8. 규제등록 및 관리 총괄 9. 물가안정·소비자보호 및 산업진흥에 관한 사항 10.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1. 연료수급 및 유류·가스에 관한 사항 12. 농·축·수산 및 양정 유통에 관한 사항 13. 지역단위 경제발전에 관한 사항 14. 노사지원 및 실업대책업무에 관한 사항 15. 경영수익 및 민간공동출자 사업에 관한 사항 16. 직업안정에 관한 사항 17. 일자리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18. 사회적기업 전반에 관한 사항 19. 마을기업육성에 관한 사항 20. 구비, 시비, 국비회계의 총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1. 계약심의업무에 관한 사항 22. 복식부기에 관한 사항 23. 물품(차량포함)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4. 국·공유재산 취득·처분·관리에 관한 사항 25. 지방세 목표액 책정 및 전망분석에 관한 사항 26. 지방세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27. 구 금고 계약에 관한 사항 28. 지방세 제도의 운영 및 세원개발에 관한 사항 29. 지방세의 수입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0. 세외수입 및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31. 개별주택 가격조사에 관한 사항 32. 기부금품 모집통제에 관한 사항 33. 그 밖에 기획경제국 소관분야와 유사하거나 연관된 사항

【별표 2】

사 무 분 장 표 (제 5 조 관 련)

국 명	분 장 사 무
복지환경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서비스 제공·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평가 및 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행정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사항 5. 호국보훈에 관한 사항 6. 보건 및 복지서비스 연계업무에 관한 사항 7. 희망복지 129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8.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 9.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 10. 긴급복지지원에 사업에 관한 사항 11. 자활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12.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13.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14. 여성·가족복지 및 여성단체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 15.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6.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17. 저출산대책 등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18. 보육 업무에 관한 사항 19.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20. 드림스타트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21. 폐기물에 관한 사항 22. 자원 재활용에 관한 사항 23. 국토대청결운동에 관한 사항 24. 공중 및 식품위생영업 신고 및 지도 관리에 관한 사항 25.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에 관한 사항 26. 식중독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7. 부정불량식품 등 유통식품 관리에 관한 사항 28. 환경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9. 자연보호활동에 관한 사항 30.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1.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32. 저탄소녹색성장 및 녹색생활실천에 관한 사항 33. 기후변화대응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4. 그 밖에 복지환경국 소관분야와 유사하거나 연관된 사항

【별표 3】

사 무 분 장 표 (제 5 조 의 2 관 련)

국 명	분 장 사 무
도시교통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설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지방토목·건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도로(도로폭20M이하) 및 도로부속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하수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하천 및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사항 6.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7. 무허가건축물 단속에 관한 사항 8. 건축물관리대장 관리 및 전산화 발급 업무 9. 건축행정정책 정보화 업무 10.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11. 공동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에 관한 사항 12.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14. 주거급여 사업에 관한 사항 15. 광고물업무에 관한 사항 16. 도시경관업무에 관한 사항 17.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사항 18.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19.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항 20. 산림자원 보전 및 휴양기능 증대 전반에 관한 사항 21. 녹지조경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22.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 전반에 관한 사항 23.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30. 토지관리 및 지적에 관한 사항 31.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 32.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사항 33. 교통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4. 주차시설 확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5. 교통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36.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사항 37.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38.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사항 39. 화물 및 여객자동차에 관한 사항 40. 무단방치차량에 관한 사항 41.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42. 자동차등록에 관한 사항 43. 의무보험 미가입자 가입 촉구 등에 관한 사항 44. 그 밖에 도시교통국 소관분야와 유사하거나 연관된 사항

【별표 4】

사 무 분 장 표 (제 6 조 관 련)

국 명	분 장 사 무
자치행정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무, 의전, 보안 및 청사방호에 관한 사항 2. 공무원 인사, 후생복지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특별사법경찰관리 사무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및 상용노조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6. 국민운동단체(민간단체)에 관한 사항 7. 일제강제동원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 8. 과거사 진실규명에 관한 사항 9.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및 구역의 조정에 관한 사항 10. 주민자치센터운영에 관한 사항 11. 마을공동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총괄조정 13. 구 안전관리계획 등 각종 계획 수립 14. 문화예술진흥 및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 15.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16. 여가레저활동에 관한 사항 17. 평생학습도시에 관한 사항 18.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19.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에 관한 사항 20. 홍보기획, 보도, 미디어활동, 통신지원에 관한 사항 21. 신문 및 방송 보도와 관련한 홍보에 관한 사항 22. 구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3. 행정정보화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4. 문서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25. 기록물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26. 정보공개 신청서류 접수 통제에 관한 사항 27.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28.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29. 주민등록 및 주민전산화·외국인등록에 관한 사항 30.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31. 여권발급 업무 등에 관한 사항 32. 그 밖에 다른 국·실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별표 6】

도서관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 (제10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할 구역
연수청학도서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솔샘로 146	연수구 일원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국장 및 부서장 등의 직급 및 사무분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이하 “구” 라 한다) 본청의 국장, 부서장, <u>직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 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단·과의 사무분장</u>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3조(국 등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u>행정안전국, 교육문화자치국, 주민복지국, 경제환경국, 도시관리국, 기획예산실, 송도관리단, 감사실, 홍보미디어실을 둔다.</u></p> <p>제4조(행정안전국) ① <u>행정안전국에 총무과, 재무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안전관리과, 민원여권과를 둔다.</u></p> <p>② <u>행정안전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1” 과 같다.</u></p> <p>제4조의2(교육문화자치국) ① <u>교육문화자치국에 평생교육과, 문화체육과, 마을자치과, 도서관정책과를 둔다.</u></p> <p>② <u>교육문화자치국장의 분장사무</u></p>	<p>제2조(국장 및 부서장 등의 직급 및 사무분장) ----- ----- ---, -----, <u>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u>----- <u>단·실·과</u>----- -----.</p> <p>제3조(국 등의 설치) ----- ----- <u>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도시교통국, 자치행정국, 송도관리단, 비전전략실, 감사실</u>-----.</p> <p>제4조(기획경제국) ① <u>기획경제국에 기획예산과, 경제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재무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를 둔다.</u></p> <p>② <u>기획경제국장</u>----- -----.</p> <p><삭 제></p>

는 “별표 2” 와 같다.

제5조(주민복지국) ① 주민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출산보육과를 둔다.

② 주민복지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3” 과 같다.

제5조의2(경제환경국) ① 경제환경국에 경제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 공원녹지과, 위생정책과를 둔다.

② 경제환경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4” 와 같다.

제6조(도시관리국) ① 도시관리국에 건설과, 건축과, 도시주택과, 도시계획과,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 공간정보과를 둔다.

② 도시관리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5” 와 같다.

제7조(설치)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6” 과 같다.

<신 설>

제5조(복지환경국) ① 복지환경국에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출산보육과, 청소행정과, 위생정책과, 환경보전과를 둔다.

② 복지환경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2” 와 같다.

제5조의2(도시교통국) ① 도시교통국에 건설과, 건축과, 도시주택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공간정보과,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를 둔다.

② 도시교통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3” 과 같다.

제6조(자치행정국) ① 자치행정국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관리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홍보미디어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② 자치행정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4” 와 같다.

제7조(설치) ① (생 략)

② -----

----- “별표 5” 와 -----.

제4장 사업소

<신 설>

<신 설>

<신 설>

제4장 하부행정기관

제10조 ~ 제12조 (생 략)

제10조(설치) ① 법 제127조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에 사업소를 둔다.

②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관할구역은 “별표 6” 과 같다.

제11조(사업소장) 사업소에 소장
또는 관장(이하 “사업소장” 이
라 한다)을 두며 사업소장은 구청
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
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
다.

제12조(업무) 사업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

제13조 ~ 제15조 (현행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와 같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p>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p>	<p>1. 제안이유</p> <p>○ 2022년 기준인건비 배정 인력 등을 반영하고, 현안 업무 과중 부서에 정원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p> <p>2. 주요내용</p> <p>○ 정원의 총수 : 979명 ⇨ 1,006명 (증 27명)</p> <p>○ 기관별 정원 조정</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f5f5f5;">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계</th> <th style="text-align: center;">본청</th> <th style="text-align: center;">의회</th> <th style="text-align: center;">직속기관 (보건소)</th> <th style="text-align: center;">사업소 (도서관)</th> <th style="text-align: center;">동</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현정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979</td> <td style="text-align: center;">641</td> <td style="text-align: center;">22</td> <td style="text-align: center;">88</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228</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조정(안)</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6</td> <td style="text-align: center;">638</td> <td style="text-align: center;">23</td> <td style="text-align: center;">89</td> <td style="text-align: center;">26</td> <td style="text-align: center;">23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증 감</td> <td style="text-align: center;">+27</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26</td> <td style="text-align: center;">+ 2</td> </tr> </tbody> </table>	구 분	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보건소)	사업소 (도서관)	동	현정원	979	641	22	88	-	228	조정(안)	1,006	638	23	89	26	230	증 감	+27	△3	+1	+1	+26	+ 2
구 분	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보건소)	사업소 (도서관)	동																							
현정원	979	641	22	88	-	228																							
조정(안)	1,006	638	23	89	26	230																							
증 감	+27	△3	+1	+1	+26	+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이 재 호

2022. 10. 12.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457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979명”을 “1,00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957명”을 “983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22명”을 “23명”으로 한다.

별표 2,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 이내	7% 이내	24% 이내	33% 이내	30% 이내	5% 이상

2. 연구직공무원

구 분	연 구 관	연 구 사
비 율	3% 이내	97% 이상

3.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 상당 이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 율	25% 이내	25% 이내	25% 이내	25% 이상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 기 구	직속기관 (보건소)	사업소 (도서관)	동
총 계	1,006	638	23	89	26	230
정무직 계	1	1	-			
구청장	1	1	-			
일반직 계	1,000	632	23	89	26	230
3급	1	1	-			
4급	7	5	1	1		
5급	59	32	2	9	1	15
6급 이하	933	594	20	79	25	215
연구직 계	1	1	-			
연구사	1	1	-			
별정직 계	4	4	-			
5급 상당	1	1	-			
6급 상당 이하	3	3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979명으로 하며,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정원은 다음과 같다.</p> <p>1. 집행기관 : 957명</p> <p>2. 의회사무기구 : 22명</p> <p>[별표 2]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p> <p>1. 일반직 공무원 2. 연구직 공무원 3. 별정직공무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구 분</th> <th>5급상당 이상</th> <th>6급 상당</th> <th>7급 상당</th> <th>8급 상당</th> <th>9급 상당</th> </tr> <tr> <td>비 율</td> <td>-</td> <td>34% 이내</td> <td>34% 이내</td> <td>32% 이상</td> <td>-</td> </tr> </table> <p>[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기관별 직급별</th> <th>총 계</th> <th>본 청</th> <th>의회사무 기 구</th> <th>직속기관 (보건소)</th> <th>동</th> </tr> <tr> <td>총 계</td> <td>979</td> <td>641</td> <td>22</td> <td>88</td> <td>228</td> </tr> <tr> <td>정무직 계</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r> <tr> <td>구청장</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r> <tr> <td>일반직 계</td> <td>974</td> <td>636</td> <td>22</td> <td>88</td> <td>228</td> </tr> <tr> <td>3급</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r> <tr> <td>4급</td> <td>7</td> <td>5</td> <td>1</td> <td>1</td> <td>-</td> </tr> <tr> <td>5급</td> <td>59</td> <td>33</td> <td>2</td> <td>9</td> <td>15</td> </tr> <tr> <td>6급 이하</td> <td>907</td> <td>597</td> <td>19</td> <td>78</td> <td>213</td> </tr> <tr> <td>연구직 계</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r> <tr> <td>연구사</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r> <tr> <td>별정직 계</td> <td>3</td> <td>3</td> <td>-</td> <td>-</td> <td>-</td> </tr> <tr> <td>6급 상당 이하</td> <td>3</td> <td>3</td> <td>-</td> <td>-</td> <td>-</td> </tr> </table>	구 분	5급상당 이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 율	-	34% 이내	34% 이내	32% 이상	-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 기 구	직속기관 (보건소)	동	총 계	979	641	22	88	228	정무직 계	1	1	-	-	-	구청장	1	1	-	-	-	일반직 계	974	636	22	88	228	3급	1	1	-	-	-	4급	7	5	1	1	-	5급	59	33	2	9	15	6급 이하	907	597	19	78	213	연구직 계	1	1	-	-	-	연구사	1	1	-	-	-	별정직 계	3	3	-	-	-	6급 상당 이하	3	3	-	-	-	<p>제2조(정원의 총수) ----- -----1,006명----- ----- -----.</p> <p>1. ----- : 983명</p> <p>2. ----- : 23명</p> <p>[별표 2]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p> <p>1. 일반직 공무원 2. 연구직 공무원 3. 별정직공무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구 분</th> <th>5급상당 이상</th> <th>6급 상당</th> <th>7급 상당</th> <th>8급 상당</th> <th>9급 상당</th> </tr> <tr> <td>비 율</td> <td>25%이내</td> <td>25%이내</td> <td>25%이내</td> <td>25%이상</td> <td>-</td> </tr> </table> <p>[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기관별 직급별</th> <th>총 계</th> <th>본 청</th> <th>의회사무 기 구</th> <th>직속기관 (보건소)</th> <th>사업소 (도서관)</th> <th>동</th> </tr> <tr> <td>총 계</td> <td>1,006</td> <td>638</td> <td>23</td> <td>89</td> <td>26</td> <td>230</td> </tr> <tr> <td>정무직 계</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구청장</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일반직 계</td> <td>1,000</td> <td>632</td> <td>23</td> <td>89</td> <td>26</td> <td>230</td> </tr> <tr> <td>3급</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급</td> <td>7</td> <td>5</td> <td>1</td> <td>1</td> <td>-</td> <td>-</td> </tr> <tr> <td>5급</td> <td>59</td> <td>32</td> <td>2</td> <td>9</td> <td>1</td> <td>15</td> </tr> <tr> <td>6급 이하</td> <td>933</td> <td>594</td> <td>20</td> <td>79</td> <td>25</td> <td>215</td> </tr> <tr> <td>연구직 계</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연구사</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별정직 계</td> <td>4</td> <td>4</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5급 상당</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6급 상당 이하</td> <td>3</td> <td>3</td> <td>-</td> <td>-</td> <td>-</td> <td>-</td> </tr> </table>	구 분	5급상당 이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 율	25%이내	25%이내	25%이내	25%이상	-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 기 구	직속기관 (보건소)	사업소 (도서관)	동	총 계	1,006	638	23	89	26	230	정무직 계	1	1	-	-	-	-	구청장	1	1	-	-	-	-	일반직 계	1,000	632	23	89	26	230	3급	1	1	-	-	-	-	4급	7	5	1	1	-	-	5급	59	32	2	9	1	15	6급 이하	933	594	20	79	25	215	연구직 계	1	1	-	-	-	-	연구사	1	1	-	-	-	-	별정직 계	4	4	-	-	-	-	5급 상당	1	1	-	-	-	-	6급 상당 이하	3	3	-	-	-	-
구 분	5급상당 이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 율	-	34% 이내	34% 이내	32% 이상	-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 기 구	직속기관 (보건소)	동																																																																																																																																																																																																				
총 계	979	641	22	88	228																																																																																																																																																																																																				
정무직 계	1	1	-	-	-																																																																																																																																																																																																				
구청장	1	1	-	-	-																																																																																																																																																																																																				
일반직 계	974	636	22	88	228																																																																																																																																																																																																				
3급	1	1	-	-	-																																																																																																																																																																																																				
4급	7	5	1	1	-																																																																																																																																																																																																				
5급	59	33	2	9	15																																																																																																																																																																																																				
6급 이하	907	597	19	78	213																																																																																																																																																																																																				
연구직 계	1	1	-	-	-																																																																																																																																																																																																				
연구사	1	1	-	-	-																																																																																																																																																																																																				
별정직 계	3	3	-	-	-																																																																																																																																																																																																				
6급 상당 이하	3	3	-	-	-																																																																																																																																																																																																				
구 분	5급상당 이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 율	25%이내	25%이내	25%이내	25%이상	-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 기 구	직속기관 (보건소)	사업소 (도서관)	동																																																																																																																																																																																																			
총 계	1,006	638	23	89	26	230																																																																																																																																																																																																			
정무직 계	1	1	-	-	-	-																																																																																																																																																																																																			
구청장	1	1	-	-	-	-																																																																																																																																																																																																			
일반직 계	1,000	632	23	89	26	230																																																																																																																																																																																																			
3급	1	1	-	-	-	-																																																																																																																																																																																																			
4급	7	5	1	1	-	-																																																																																																																																																																																																			
5급	59	32	2	9	1	15																																																																																																																																																																																																			
6급 이하	933	594	20	79	25	215																																																																																																																																																																																																			
연구직 계	1	1	-	-	-	-																																																																																																																																																																																																			
연구사	1	1	-	-	-	-																																																																																																																																																																																																			
별정직 계	4	4	-	-	-	-																																																																																																																																																																																																			
5급 상당	1	1	-	-	-	-																																																																																																																																																																																																			
6급 상당 이하	3	3	-	-	-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p>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p>	<p>1. 제안이유</p> <p>○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따라 연수구의회 상임위원회 소관부서 정비</p> <p>2. 주요내용</p> <p>○ 연수구의회 상임위원회 소관부서 정비(제4조제2항 제2호 및 제3호)</p>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이 재 호

2022. 10. 12.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458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같은 조 제3호 및 제2호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획복지위원회

가. 비전전략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감사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기획경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복지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시설안전관리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자치도시위원회

- 가. 송도관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도시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라. 연수청학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마. 각 동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바. 연수문화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 의회 내에 설치하는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하며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생략) 3. (생략) <p>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생략) ② 각 상임위원회별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u>기획복지위원회</u>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u>기획예산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u> 나. <u>송도관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u> 다. <u>감사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u> 라. <u>홍보미디어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u> 마. <u>주민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u> 바. <u>경제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u> 	<p>제3조(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3. (현행 제2호와 같음) 2. (현행 제3호와 같음) <p>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현행과 같음) ②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u>기획복지위원회</u>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u>비전전략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u> 나. <u>감사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u> 다. <u>기획경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u> 라. <u>복지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u> 마. <u>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u> 바. <u>시설안전관리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u>

- 사.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아. 시설안전관리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자치도시위원회

- 가. 행정안전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삭제 <2021. 12. 24.>
- 다. 교육문화자치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라. 도시관리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마. 각 동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바. 연수문화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자치도시위원회

- 가. 송도관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도시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라. 연수청학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마. 각 동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바. 연수문화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칙(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p>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p>	<p>1. 제안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선8기 구정운영방향 실현을 위한 국을 조정하고, 사무를 재조정하여 업무추진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자 함 <p>2. 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장 및 부서장의 직명, 직렬 신설 및 변경 (제3조 ~ 제13조) ○ 부서별 분장사무 조정(별표 1) ○ 사업소 사무분장표 신설(별표 3) ○ 동장 직렬 및 직명 관련 조항 변경(별표 4)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이 재 호

2022. 10. 12.

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칙 제 760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하고, 제4조의2를 제3조로 하며, 같은 조(종전의 제4조의2) 중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송도관리단 부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비전전략실) 비전전략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조의2를 삭제한다.

제10조 앞에 “제3장 직속기관”을 삭제한다.

제4장(제12조, 제13조)을 제5장(제15조, 제16조)로 하고,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며, 제6조를 제9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기획경제국) 기획경제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기획예산과장, 경제지원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재무회계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조의2를 삭제한다.

제7조의 제목 “(주민복지국)” 을 “(복지환경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주민복지국장” 을 “복지환경국장” 으로, “보한다” 를 “보하며, 청소행정과장, 환경보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위생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로 한다.

제7조의2를 삭제한다.

제8조의 제목 “(도시관리국)” 을 “(도시교통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도시관리국장” 을 “도시교통국장” 으로, “교통행정과장, 공간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을 “공간정보과장, 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으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6조)제목 “(행정안전국)” 을 “(자치행정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국장” 을 “자치행정국장” 으로, “재무회계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 을 “자치행정과장, 문화체육과장, 교육지원과장, 홍보미디어과장” 으로 한다.

제11조 앞에 “제3장 직속기관” 을 삽입한다.

제4장(제13조, 제14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사업소

제13조(관장의 직급) 연수청학도서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14조(분장사무) 관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

제16조(종전의 제13조) 중 “ “별표 3” 과 “를 “ “별표 5” 와” 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3을 별표 5로 하며,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안전국장” 을 “자치행정국장” 으로 , “교육문화자치국장” 을 “기획경제국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문화자치국장, 주민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기획예산실장” 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본청의 각 국장” 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연수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행정안전국장, 교육문화자치국장, 주민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을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 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 을 각각 “기획예산과장” 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기획예산실장” 을 “기획예산과장” 으로 한다.

제4조제1항과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중 “기획예산실장” 을 각각 “기획예산과장” 으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 연수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 을 “기획예산과장” 으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 연수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기획예산실장” 을 “기획예산과장” 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중 “기획예산실” 을 “기획예산과” 로 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예산실장” 을 각각 “기획예산과장” 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예산실장” 을 각각 “기획예산과장” 으로 한다.

제9조,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 을 각각 “기획예산과장” 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전단 중 “기획예산실” 을 “기획예산과”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예산실장” 을 “기획예산과장” 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예산실” 을 “기획예산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 을 “기획예산과장” 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국장” 을 “국장, 사업소장” 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기획예산실장” 을 각각 “기획예산과장” 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기획예산실장” 을 “기획예산과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출장소장” 을 “사업소장” 으로 한다.

제2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과 단서,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제31조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 을 각각 “기획예산과장” 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 을 각각 “기획예산과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출장소장” 을 “사업소장” 으로 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호,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6조 중 “기획예산실장” 을 각각 “기획예산과장” 으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25조제1항 중 “기획예산실장” 을 “기획예산과장” 으로 한다.

⑧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홍보미디어실” 을 “홍보미디어과” 로 한다.

⑨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마을자치과장” 을 “자치행정과장” 으로 한다.

⑩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와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중 “자원순환과장” 을 각각 “폐기물업무 담당부서의 장” 으로 한다.

【별표 1】

구 본청 부서 사무분장표 (제10조 관련)

부서명	분 장 사 무
송도관리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제자유구역청 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2. 송도관리단 담당 인·허가(신고) 민원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옥외광고물 신고 및 허가, 연장에 관한 사항(송도동) 4.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실시 및 위탁에 관한 사항(송도동) 5. 현수막 게시대 및 게시판 설치,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송도동) 6.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에 관한 사항(송도동) 7.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에 관한 사항(송도동) 8.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에 관한 사항(송도동) 9. 옥외광고물 위반에 관한 사항(송도동) 10. 등록면허세 신고분 고지서 발급(송도동) 11. 인·허가 관련 지방세 체납 확인 12. 송도국제도시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도로폭 20미터 이하)에 관한 사항 13. 송도국제도시 도로(도로폭 20미터 이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4. 송도국제도시 보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5. 송도국제도시 보행자전용(우선)도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6. 송도국제도시 도로부속시설(과속방지턱, 블라드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7. 송도국제도시 지하차도(보도 포함)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8. 송도국제도시 도로표지판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9. 송도국제도시 공공하수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0. 송도국제도시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1. 송도국제도시 배수설비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22. 송도국제도시 도로점용 허가에 관한 사항 23. 송도국제도시 도로, 하수 등(기반시설) 이관에 관한 사항(경제청→연수구) 24. 송도국제도시 사도 개설허가에 관한 사항 25. 송도국제도시 도로조명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송도관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26. 송도국제도시 지하차도 전기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7. 송도국제도시 보도육교 전기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8. 송도국제도시 도로조명 이관에 관한 사항(경제청→연수구) 29. 송도국제도시 도로조명(이설, 신설) 협의에 관한 사항 30. 송도국제도시 전기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1. 송도국제도시 전기공사법에 관한 사항 32. 송도국제도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3.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관리(공원녹지분야) 34. 송도국제도시 도시공원(소공원·어린이공원·면적10만제곱미터 미만 근린·주제공원) 관리·정비에 관한 사항 35. 송도국제도시 녹지(완충·경관·연결녹지) 관리·정비에 관한 사항 36. 송도국제도시 도시공원·녹지 점용(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37. 송도국제도시 도시공원 조성계획의 입안 및 협의 38. 송도국제도시 가로녹지(가로수·수벽·중앙분리대·보행자전용 도로 녹지 등) 관리·정비에 관한 사항 39. 송도국제도시 가로녹지(가로수·수벽·중앙분리대·보행자전용 도로 녹지 등) 수목 협의 및 원인자·훼손자 부담금 징수 관리 40. 송도국제도시 녹지활용계약 추진에 관한 사항 41. 송도국제도시 광장(일반광장·경관광장)의 설치 및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42. 송도국제도시 도시공원·녹지, 가로녹지, 광장 등 이관에 관한 사항 (경제청 → 연수구) 43. 송도국제도시 도시녹화·조경사업 추진 44. 송도국제도시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사무(사용·수익허가·불법 시설물관리 등) 45. 송도국제도시 시민참여 녹화사업 및 푸른 마을 가꾸기 사업에 관한 사항 46. 송도국제도시 공원·녹지 등 전기시설물 관리 및 정비 47. 송도국제도시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p>송도관리단</p>	<p>48.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관리주체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p> <p>49. 송도국제도시 공동주택 관리실태 지도·점검</p> <p>50. 송도국제도시 공동주택 분쟁조정 및 민원처리</p> <p>51. 송도국제도시 공동주택 계약업무 관련 법률자문</p> <p>52. 송도국제도시 공동주택 하자보수증권 관리에 관한 사항</p> <p>53. 송도국제도시 공동주택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p> <p>54. 송도국제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p> <p>55.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사항(송도동)</p> <p>56. 도로청소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송도동)</p> <p>57.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변경신고 및 지도점검,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송도동)</p> <p>58. 생활소음, 진동, 먼지 민원 처리(송도동)</p> <p>59. 운행차 소음 단속 및 규제(송도동)</p> <p>60. 미세먼지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송도동)</p> <p>61. 식품접객업 인·허가에 관한 사항(송도동)</p> <p>62.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지위승계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송도동)</p> <p>63. 식품접객업소 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신고에 관한 사항(송도동)</p> <p>64.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송도동)</p> <p>65.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무신고)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소송·심판에 관한 사항(송도동)</p> <p>66. 식품지도단속 관련 신고, 진정 등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송도동)</p> <p>67. 식품분야 사법경찰관리 직무집행에 관한 사항(송도동)</p> <p>68. 식품 위생업소 특정관리 대상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송도동)</p>

부서명	분 장 사 무
비전전략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정책 종합 연구계획 수립 등 구의 핵심전략사업 및 프로젝트 사업 정책 및 전략 개발에 관한 사항 (정책개발에 따른 종합계획 및 전략방안 수립 후 사업부서 배부) 2. 공공건축물 건립 및 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설계, 시공, 감리에 관한 사항 (구·동청사 제외) 3.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에 대한 건설기술 용역 및 시공평가에 관한 사항 4. 연수구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른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업무

부서명	분 장 사 무
감 사 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감사 및 그 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 3. 비위공무원 징계요구 및 소청에 관한 사항 4. 청원진정서 처리에 관한 사항 5. 상급기관 이첩사항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6. 사무인계인수사항 확인에 관한 사항 7. 민원서류 처리 점검에 관한 사항 8. 감사사항의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9. 공직기강 쇄신 추진에 관한 사항 10.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11. 클린신고센터 운영 12.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13.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14. 중요정보 및 민원사항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15. 청렴도 관련 업무 16. 청탁등록 시스템 운영 17. 물품구매·제조, 용역사업, 시설공사의 원가계산 및 심사·조정에 관한 사항 18. 계약심사 관련규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19. 원가계산 능력 배양 및 우수사례 전파에 관한 사항 20. 부정청탁금지법에 관한 사항 21. 부패영향평가제도 운영 22.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23.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운영 24. 공공분야 갑질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 25.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6. 인권보장 및 증진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기획예산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구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2. 사무위임 및 사무전결에 관한 사항 3.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사항 4. 구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5. 지시사항 관리 6. 위원회 관리 7. 구정백서 및 구정현황 발간에 관한 사항 8.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9. 구정의 중·장기종합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10. 당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1. 시 확대간부 회의 12. 구청장직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13. 공무원 공무국의 출장 허가에 관한 사항 14. 국내·외 회의(대회)유치에 관한 사항 15.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및 행정협정체결에 관한 사항 16. 국내·외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7. 지방분권·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18. 지방이양 사무에 관한 사항 19. 일반회계·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배정에 관한 사항 20. 국고 및 시비 보조금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1. 세출예산의 변경(전용, 이체, 이용, 변경 등) 사용에 관한 사항 22. 성립전 예산 및 예비비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23. 예산의(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에 관한 사항 24. 교부세, 조정교부금 관리에 관한 사항 25.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6. 중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 27. 주요 재정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28. 지방보조금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p>기획예산과</p>	<p>29. 예산성과계획에 관한 사항 30.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1. 지방재정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32. 재정전망 분석 및 제도 연구 발전 33. 지방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 34.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5. 지방채무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6. 기금 운영 총괄 조정·관리 37. 소규모 주민생활 편의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38. 용역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 39. 예산절감 대책 및 건전화 계획 이행에 관한 사항 40. 재정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41. 예산낭비 대응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42. 지방공기업 등에 관한 사항 43. 출자·출연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44. 구 법제 행정의 종합기획에 관한 사항 45. 구 의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6.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 개정, 폐지, 공포에 관한 사항 47. 고시, 공고 등 중요문서의 심사에 관한 사항 48. 법제자료의 조사, 수집, 연구에 관한 사항 49. 법령 및 자치법규 질의, 해석에 관한 사항 50. 행정법규 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 51.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52.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53. 소송사건 처리 결과의 심사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54. 소송대리인 선임 및 소송수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55.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사항 56.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57. 구 본청, 산하기관, 단체의 주요업무에 대한 확인평가 및 결과조치 58.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59. 국정시책 연계 군·구 평가 총괄 관리 60. 주요 대형 프로젝트 점검확인 및 구민불편사항 확인 평가</p>

부서명	분 장 사 무
<p>기획예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61. 외부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총괄적인 업무) 62. 규제등록 및 관리 총괄 63. 규제개혁추진 계획 수립 64.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과제 발굴 65.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등 발굴 및 개선 66. 기업 등 지역현장 규제애로 발굴 및 제도 개선 67. 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 대응 68. 자치법규 행정규제 심사 69. 등록규제 일제정비 및 표준화 사업 70. 지방규제 정보지도시스템 71.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72. 정책연구 수행을 위한 인천연구원과의 협업·조언 자문에 관한 사항 73. 갈등 업무에 관한 사항 74. 인천 신항 관련사업 및 배후지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75. 그 밖에 기획경제국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경제지원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경제 육성 세부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수출 진흥에 관한 사무에 관한 사항 3. 지역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 유지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지역산품 전시회 개최 및 구매자 유치지원에 관한 사항 5.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6. 지역물가 종합대책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7. 방문·통신·전화권유 판매업에 관한 업무 8. 지역특화산업 육성개발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9. 지역경제 육성을 위한 자금 세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10. 어선등록 및 변경신청 등에 관한 사항 11. 주민 지역경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2. 농업행정의 종합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3. 농업단체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14. 양정에 관한 사항 15. 원예 및 특용작물에 관한 사무에 관한 사항 16. 농림 축 수산물 생산지원 및 관리지도에 관한 사항 17.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18. 농업 운영에 관한 사항 19. 양식사업 및 어업기반 조성을 위한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0. 식량작물 생산 장려에 관한 사항 21. 농작물 병충해방제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2. 농지원부 작성 및 교부에 관한 사항 23. 농지전용에 관한 사항 24. 농지타용도 일시 사용에 관한 사항 25.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및 징수 관리에 관한 사항 26. 자경증명발급 신청에 관한 사항 27.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8.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9. 어선표지판 교부 신청에 관한 사항 30. 어업허가 신청 및 어업폐지 신고에 관한 사항 31. 어선등록말소 신청 및 어업휴업 신고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경제지원과	32.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 33. 선박원부등본 교부에 관한 사항 34. 수산물 원산지 표시지도에 관한 사항 35. 어선 건·개조 발주에 관한 사항 36. 낚시어업신고에 관한 사항 37. 축산업 등록제에 관한 사항 38. 축산진흥 지방특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9. 축산물 유통개선 지도에 관한 사항 40. 축산물 등급제 지도에 관한 사항 41. 농·축·수산물 직거래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2. 축산물보관업 허가에 관한 사항 43. 축산물 운반업, 판매업 신고에 관한 사항 44. 축산식품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45. 축산물 보관업, 운반업, 판매업의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46. 축산물 위생관리 지도에 관한 사항 47. 유기동물 보호·처리에 관한 사항 48. 동물등록제에 관한 사항 49. 동물병원, 약국에 관한 사항 50. 동물판매업, 수입업, 생산업, 장묘업에 관한 사항 51. 가축전염병에 관한 사항 52. 축산차량등록에 관한 사항 53. 경지이용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54. 농업자재의 관리에 관한 사항 55. 농수산물 가공공장의 지정에 관한 사항 56. 농가부업 장려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57. 국유재산에 관한 사항 58. 수출농식품 지원에 관한 사항 59. 시장개설 등록 및 변경신청 등에 관한 사항 60. 가격표시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1.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지도에 관한 사항 62. 대형 농·수산물 유통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경제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63. 농·수·축산물 가격동향 관리에 관한 사항 64. 농·수·축산물 직거래에 관한 사항 65. 대부업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 66. 대부업 관리 지도에 관한 사항 67. 부정경쟁 방지업무 관리 지도에 관한 사항 68. 복권업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9. 개인서비스업 품목가격조사 및 관리지도에 관한 사항 70. 개인서비스업 조사원 관리에 관한 사항 71. 재래시장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72. 상권활성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3. 지역중소상인 지원에 관한 사항 74. 상점가 진흥조합 관리 지도에 관한 사항 75. 유통상생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76.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77.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관한 사항 78. 석유사업법에 관한 사항 79.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위임에 관한 사항 80. 석유사업법 위임에 관한 사항 8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위임에 관한 사항 82. 민관 공동출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83. 계량기에 관한 사무에 관한 사항 84. 가격표시제 실시업소 지정 관리에 관한 사항 85. 기계 및 섬유공업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86. 지역 상공단체의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 87. 유통산업 근대화 사업의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8. 민속공예산업 육성 실시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89. 우수토산품 등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90. 공예품 등 전문 생산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 91. 토산품 등 생산기술 전승자의 발굴 보호에 관한 사항 92. 지방공업육성을 위한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93. 공장등록 및 제증명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경제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94. 공장설립 승인에 관한 사항 95.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관한 사항 96.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공장유치에 관한 사항 97. 그 밖에 상공에 관한 사무에 관한 사항 98. 가스안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99. 가스안전점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0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관한 사항 10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관한 사항 102. 도시가스사업법에 관한 사항 103. 도시가스사업법 위임에 관한 사항 10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임에 관한 사항 105. 신재생에너지사업에 관한 사항 106.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07. 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08. 불법공산품 지도·단속 및 원산지표시관련 업무 109.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관한 다음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개선·과기수거명령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한 공표교환 환불 수리 등의 명령 나. 보고 및 검사 등 다. 과태료 부과·징수 110. 중소기업 창업지도에 관한 사항 111. 승강기에 관한 사항 112.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임에 관한 사항 113. 신용보증재단 출연에 관한 사항 114. 공공기관 법인카드 적립포인트 관리 115. 유료광고 조례에 관한 사항 116. 담배 도매인 지정 및 폐업에 관한 사항 117. 노·사·정 협의회에 관한 사항 118. 노동행정의 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119. 노동단체의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120. 근로자 복지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21. 노동대책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경제지원과	122. 중소기업기본법에 관한 사항 123. 창업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 124. 지역 내 기업의 정보 기술 및 자금수요과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5. 지방중소기업 육성지원 세부계획의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126. 당해지역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127. 중소기업 육성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 128.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129. 지방 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0. 새마을 금고 육성에 관한 사항 131. 송도 중고차 수출단지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일자리정책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자리 창출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2.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시책 개발 3. 지역브랜드 일자리 창출 시책 개발 4. 지역고용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맞춤형 직업훈련 개발에 관한 사항 6. 기업연계형 인력지원에 관한 사항 7. 연수일자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8.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에 관한 사항 9.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10.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11. 고용 정책 사업에 관한 사항 12.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관한 사항 13.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14. 청년 일자리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6. 구인·구직의 개척 및 취업알선에 관한 사항 17. 구인·구직 등록 및 상담에 관한 사항 18. 구인·구직 만남의 날(취업박람회)에 관한 사항 19. 무허가 직업소개 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 20. 직업안내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1. 유·무료 직업소개사업 허가에 관한 사항 22. 직업소개 사업자 및 종사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23.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24. 사회적기업 교육 및 홍보사업 25.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지원 26. 사회적기업 생산품 우선 구매 27. 협동조합 제도 홍보에 관한 사항 28. 마을기업 육성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9. 마을기업 육성사업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재무회계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계문서 심사 및 구 사업소 동 회계문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 세출예산의 정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회계관리 법규의 정비에 관한 사항 4. 원천징수금 징수 불입에 관한 사항 5.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항 6. 부가가치세 불입 및 세금계산서 처리에 관한 사항 7. 국비, 시비 정리에 관한 사항 8. 회계관계 직인 보관에 관한 사항 9. 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 10. 회계관계 증빙서류 보관에 관한 사항 11. 구 금고의 세출분야 감독에 관한 사항 12. 구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 13.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에 관한 사항 14. 급여압류자 관리에 관한 사항 15. 복식부기에 관한 사항 16. 공용차량의 정수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8.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9. 연수아트홀·대회의실 대관에 관한 사항 (사용신청(승인) 및 사용료부과(징수)) 20. 도시계획시설 중 공공청사(구청사, 동청사) 부지의 매수

부서명	분 장 사 무
세무1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세무행정의 종합조정 및 통제에 관한 사항 2. 지방세 목표액 책정 및 전망분석에 관한 사항 3. 지방세(재산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취득세(부동산), 레저세, 주민세)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4. 지방세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지방세(재산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취득세(부동산), 레저세, 주민세) 이의신청(심의위원회) 및 심사청구서 전달에 관한 사항 6. 지방세 운영평가 및 표창에 관한 사항 7. 지방세(재산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취득세(부동산), 레저세, 주민세) 납세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8. 세정자료의 조사와 세표작성 및 통계에 관한 사항 9. 과세시가 표준액 조사에 관한 사항 10. 지방세(재산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취득세(부동산), 레저세, 주민세) 과세대장 정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지방세(재산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취득세(부동산), 레저세, 주민세) 징수업무에 관한 사항 12. 현년도 지방세(재산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취득세(부동산), 레저세, 주민세) 독촉고지에 관한 사항 13. 현년도, 과년도 지방세(재산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취득세(부동산), 레저세, 주민세) 부과취소·경정 및 가산금조정에 관한 사항 14. 지방세 징수분야 전산화추진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5. 지방세의 수입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6. 수입금 출납사무 및 과오납금 환불에 관한 사항 17. 세무에 관한 제증명 발급 및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18. 세무전산화 추진운영 19. 부동산 취득세 수납사항 대사에 관한 사항 20. 개별주택가격조사 세부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1. 건물현황 및 주변특성 조사에 관한 사항 22. 시가표준액 산정에 관한 사항 23.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개별 통지에 관한 사항 24. 개별주택가격 관련 이의신청 접수 및 재 산정 등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세무2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세(자동차세, 취득세(차량), 등록면허세(차량), 지방소득세)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2. 지방세(자동차세, 취득세(차량), 등록면허세(차량), 지방소득세) 이의 신청(심의위원회) 및 심사청구서 전달에 관한 사항 3. 지방세(자동차세, 취득세(차량), 등록면허세(차량), 지방소득세) 납세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지방세(자동차세, 취득세(차량), 등록면허세(차량), 지방소득세) 과세 대장 정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방세(자동차세, 취득세(차량), 등록면허세(차량), 지방소득세) 징수 업무의 종합조정 및 통제에 관한 사항 6. 현년도, 과년도 지방세 체납관리 에 관한 사항 7. 현년도 지방세(자동차세, 취득세(차량), 등록면허세(차량), 지방소득세) 독촉고지에 관한 사항 8. 현년도, 과년도 지방세(자동차세, 취득세(차량), 등록면허세(차량), 지방소득세) 부과취소·경정 및 가산금조정에 관한 사항 9. 현년도, 과년도 지방세 증가산금 조정에 관한 사무 10. 지방세 교부청구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11. 수입금 출납사무 및 과오납금 환부에 관한 사항 12. 구금고 계약 및 수납기관 지도에 관한 사항 13. 세외수입의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14. 기부금품 모집 통제에 관한 사항 15. 기부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16. 구 수입증지에 관한 사항 17.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요율 조정에 관한 사항 18. 채권관리 및 세입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19. 지방세 체납액 정리계획 수립 20. 현년도, 과년도 지방세 징수촉탁서 처리 및 교부청구에 관한 사항 21. 현년도, 과년도 지방세 재산압류 및 공매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세무2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22. 지방세 징수 포상금에 대한 사항 23. 지방세 체납자 형사고발에 대한 사항 24. 지방소득세 부과·징수·환급 25. 지방소득세 공제·감면 26. 지방소득세 대장관리·전산시스템 운영 27. 세외수입(일반회계) 과년도 체납처분(교부청구제외)에 관한사항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재산임대수입, 변상금, 수수료수입, 보조금반환수입, 기타수입, 과징금(부동산실명법과징금), 환수금, 부담금(개발부담금) 제외) 28.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

부서명	분 장 사 무
복지정책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복지사업의 기획·개발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 시책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국가보훈단체지원·협력 및 보조 등에 관한 사항 6.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7. 사회복지기금 운영 계획 및 결산 총괄 8. 사회복지기금 중 사회복지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9. 사회복지 법인 관리 및 지도 감독 10.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부랑인 및 노숙자보호에 관한 사항 12. 행려자·사망자 관리에 관한 사항 13. 사회복지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 1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6. 지역복지자원 조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사회복지협의회 협력업무에 관한 사항 18. 보건 및 복지서비스 연계업무에 관한 사항 19. 이웃돕기 지원 및 관리·후원 결연에 관한 사항 20. 민관협력복지사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1.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업 연계 22. 지역사회투자사업 총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3.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설치·운영·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4. 통합사례관리사 관리 25. 통합사례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26.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에 관한 사항 27. 희망복지 129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8.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 29.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관한 사항 30. 복지통장 운영에 관한 사항 31. 방문형서비스 사업에 관한 사항 32. 그 밖에 복지환경국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사회보장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복지대상자 신규조사에 관한 사항 2.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및 변동·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3.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연간 조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급여지급(주거급여 제외) 관리 전반 사항 5. 복지대상자 신규신청에 따른 보장결정 및 통지에 관한 사항 6.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7.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보장결정 및 통지에 관한 사항 8. 저소득층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9.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지원 10. 기초수급자 쓰레기봉투 지원 11. 의료급여대상자 관리 및 의료급여의 실시에 관한 사항 12. 의료급여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13. 의료급여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채권관리에 관한 사항 14.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15. 의료급여 사후관리(본인부담금 및 환급금, 환수결정내역, 투여기간 관리, 의약품 관리)에 관한 사항 16. 의료급여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17.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운영 18. 의료급여 사례 관리 19. 의료급여 제한 여부 조사 및 상해요인, 중복 청구 조사 20. 의료급여 연장승인 및 선택병의원 관리 21.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관리 22.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23. 장애인보장구 지원 관리 24. 차상위자활 보장결정 및 통지에 관한 사항 25. 차상위자활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6. 자활사업대상자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7. 자활사업 프로그램 실시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28. 자활공동체 인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9.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30. 자활기관협의체 구성·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1.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2. 사회복지기금 중 자활사업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2.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사업에 관한 사항 33.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노인장애인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차상위장애인 보장결정 및 통지에 관한 사항 2. 차상위장애인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설치허가·운영지원 및 지도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편의시설 건축협약에 관한 사항 8. 장애인단체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에 관한 사항 10. 장애인 연금 및 수당 지급 사항 11.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12. 장애인 고속도로 감면카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복지카드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16. 장애아동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17.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 18. 노인복지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9. 고령화 대책에 관한 사항 20. 독거노인 보호 대책에 관한 사항 21.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22.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은빛사랑방) 지원에 관한 사항 23. 경로행사 등 경로사업의 실시 지원에 관한 사항 24. 기초연금 지급 사항 25. 장기요양기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6. 저소득노인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 27. 노인 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노인장애인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28. 노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9. 경로당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30.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1. 노인복지시설(경로당 포함) 보수에 관한 사항 32. 노인의 날 및 경로미팅 행사지원에 관한 사항 33. 노인학대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 34. 노인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5. 경로효친사상 양양 및 노인봉양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36. 사회복지기금 중 노인복지기금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37. 장사 등에 관한 사항 38. 외국인묘지 처리(매장·개장·유실 등)에 관한 사항 39. 노인사회활동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40.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41.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42. 50+ 정책지원에 관한 사항 43. 인생이모작센터 설립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여성아동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운영·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여성복지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단체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4.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6. 여성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7. 여성권익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8. 가정폭력방지 사업에 관한 사항 9. 성폭력방지 사업에 관한 사항 10. 양성평등기금에 관한 사항 11. 다문화가족 지원 및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2. 거주외국인 지원 업무 12. 건강가정 지원 및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3.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14. 연수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사항 15. 위기가족 상담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16.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18.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사항 19. 청소년 육성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0. 청소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1. 청소년 전용시설 확충, 청소년시설 신고처리 및 위탁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22. 모범 청소년 발굴 표창에 관한 사항 23. 각종 청소년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24. 청소년 동아리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25. 어려운 청소년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 26. 청소년 진로 생활상담 지도에 관한 사항 27. 청소년보호법 관련 과징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8. 청소년보호법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9.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관리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여성아동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통행제한구역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 31.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관리에 관한 사항 3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에 관한 사항 33. 그 밖에 청소년보호 및 청소년보호법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34. 청소년 지도자 양성 및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35.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6. 아동복지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7. 아동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8.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급여 지급 사항 39.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운영·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0. 아동수당 관리 및 지급에 관한 사항 41. 드림스타트 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위원회 구성 및 관리 42. 드림스타트 사업 사례관리 및 사례회의에 관한 사항 43. 드림스타트 사업 서비스 조정·연계 및 개발 44. 드림스타트 사업수행기관 및 협력·후원기관 선정 및 관리 45. 드림스타트 센터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46. 드림스타트 사업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7. 드림스타트 사업 민간 전문인력 관리 및 슈퍼비전 체계 운영

부서명	분 장 사 무
출산보육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저출산 인구감소 계획수립 및 지역맞춤형 시책 발굴에 관한 사항 2. 저출산 인식개선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지역인구 통계진단에 관한 사항 4. 저출산 대책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사항 6. 어린이집 인가에 관한 사항 7. 국공립어린이집 중장기 확충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및 전환설치에 관한 사항 9.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관리에 관한 사항 10.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준비에 관한 사항 11.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 관리에 관한 사항 12.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공공형·인천형 어린이집 선정관리에 관한 사항 14. 보육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5. 중장기·연차별 보육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6. 취약보육 및 특수어린이집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17. 시설 미이용 아동 영아수당, 양육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18.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9. 어린이집 종사자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 20. 어린이집 영유아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 21. 청정무상급식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2. 공동구매 급식업체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23.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4. 연수구 어린이집연합회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 25. 아이사랑꿈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6.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7. 도담도담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28.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9. 우수어린이집·열린어린이집 선정 및 인센티브지원에 관한 사항 30.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p>청소행정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 3.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대행계약 및 대행료 지급에 관한 사항(송도동 제외) 5.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지도·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에 관한 사항 7.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료 및 전반적인 관련 사항(송도동 제외) 8. 폐기물 종량제에 관한 사항 9. 종량제봉투·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및 전용수거용기에 관한 사항 10. 대형 및 가정사업계 폐기물 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 11. 도로청소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송도동 제외) 12. 도로환경미화원 관리에 관한 사항 13. 청소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14. 폐기물적환장에 관한 사항 15.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순찰, 단속 및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16.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사항 17. 마을환경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 18. 폐기물 무단투기 CCTV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9. 자원재활용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0.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에 관한 사항 21. 빈용기보증금제도 관련 사항 22. 1회용품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23. 분리수거 의무대상시설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24. 포장폐기물 발생억제에 관한 사항 25. 나눔장터 운영에 관한 사항 26. 재활용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 27. 재활용품 분리배출 수거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28. 재활용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p>청소행정과</p>	<p>29. 폐기물 처리신고의 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p> <p>30. 그 밖에 재활용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p> <p>31.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사업에 관한 사항</p> <p>32.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사업에 관한 사항</p> <p>33. 발생억제 성과평가위원회 관리에 관한 사항</p> <p>34.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관리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p> <p>35.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p> <p>36. 폐기물배출사업장 관리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p> <p>37.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에 관한 사항</p> <p>38.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사항</p> <p>39.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에 관한 사항</p> <p>40.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 포함)처리 확인증명</p> <p>41. 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행정처분에 관한 사항</p> <p>42. 폐기물처리업체 지도점검·행정처분에 관한 사항</p> <p>43. 고품연료제품 제조 및 사용시설에 관한 사항</p>

부서명	분 장 사 무
위생정책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중위생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중위생법 관련 조례개정에 관한 사항 3. 공중위생업소(이·미용, 숙박, 목욕 등)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4. 위생용품관리업(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등)신고 및 변경사항에 관한 사항 5. 공중위생업소 교육에 관한 사항 6. 공중·식품위생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 7. 식품위생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8. 식품위생법 관련 조례개정에 관한 사항 9. 유흥 및 단란주점 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송도동 제외) 10. 식품(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 11. 식품접객업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송도동 제외) 12. 식품관련업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송도동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제외) 13.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14. 식품품목보고(변경포함)에 관한 사항 15. 식품소분업·판매업·용기·포장류 제조업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16.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17. 집단급식소 및 위탁급식업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송도동 제외) 18. 식품위생업소 교육에 관한 사항(송도동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제외) 19. 식품동원(충무계획)업무에 관한 사항 20. 음식문화 개선사업(특색음식거리 지정, 맛있는 집 선정 등)에 관한 사항 21. 좋은 식단 보급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2. 모범음식점 육성 및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23. 식품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4. 위생감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5.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송도동 제외) 26. 공중·위생용품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27. 식품 무허가(무신고)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송도동 제외) 28. 공중·위생용품 허가(무신고)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29. 지도단속 관련 신고, 진정 등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송도동 제외)

부서명	분 장 사 무
위생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 식품소분·판매업소(자동판매기, 기타식품판매업 등)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31.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 32.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명예공중위생감시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3. 식품분야 사법경찰관리 직무집행에 관한 사항(송도동 제외) 34. 공중분야 사법경찰관리 직무집행에 관한 사항 35. 식품 위생업소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송도동 제외) 36. 공중위생업소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37. 식품 위생업소 특정관리 대상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송도동 제외) 38. 공중위생업소 특정관리 대상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39. 공중 및 식품접객업소내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40. 유통식품관리(식품제조가공업 등)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1. 부정불량식품 단속·수거·압류 및 폐기에 관한 사항 42. 집단식중독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3. 1399 민원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 44.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45.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46.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47.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48.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49. 고열량, 저영양 식품관리 등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법에 관한 사항 50.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51. 유전자재조합식품 지도단속 및 수거·압류·폐기 등에 관한 사항 52. 이물 민원신고 조사에 관한 사항 53.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지정업소 관리에 관한 사항 54. 식품제조업소 위생등급 설정관리에 관한 사항 55. 재래시장 위생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56.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환경보전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 검토 주민의견 수렴 등에 관한 사항 3. 환경오염특별대책지역내의 토지이용 및 시설제한에 관한 사항 4. 환경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전유공자포상계획수립 6.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7.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8.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신고 및 변경에 관한 사항 9. 토양오염 실태조사 및 정화에 관한 사항 10. 휘발성 유기오염물질·기타수질오염원의 신고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1.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관리대상기기의 신고에 관한 사항 12. 대기 배출원 및 전국 오염원 조사에 관한 사항 13. 대기, 폐수, 소음 배출시설의 허가·신고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4. 배출업소 가동개시 신고에 관한 사항 15. 건축물 석면조사 및 석면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항 16. 석면해체작업 관리에 관한 사항 17. 한강중역권 물관리에 관한 사항 18.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내의 방음·방진 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19. 저수조청소업 신고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20. 중수도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21. 환경기술인 및 다중이용시설 법정교육에 관한 사항 22. 습지보호지역 관리에 관한 사항(내륙·연안 포함) 23. 오존주의보 발령 및 해제에 관한 업무에 관한 사항 24. 수렵면허에 관한 사항 25. 야생동·식물 보호 및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 26. 정부비축물자 관리에 관한 사항 27.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8. 기후변화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 일반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29. 기후변화대응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환경보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 저탄소 녹색성장 및 녹색생활 실천·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31. 탄소포인트(개인, 아파트 단지) 운영에 관한 사항 32.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및 녹색생활 업무에 관한 사항 33.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등 인벤토리 구축에 관한 사항 34. 녹색생활 확산 및 시민실천 정착화 업무에 관한 사항 35. 탄소배출권 거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6.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37. 대기, 폐수, 소음 배출시설의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38. 대기, 폐수, 소음 배출시설의 부과금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39. 절수설비 설치에 관한 사항 40. 무허가신고 배출업소 행정처분 사항 41.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변경에 관한 사항(송도동 제외) 42. 비산먼지 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송도동 제외) 43. 생활소음 지도단속 업무에 관한 사항(송도동 제외) 44.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및 행정처분 사항 45.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 체납 과태료 조정부과 사항 46. 이륜자동차 정밀검사 관리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47.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48. 저수조 청소업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49. 휘발성 유기오염물질·기타수질오염원의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50.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관리대상기기의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51. 다중이용시설 검사에 관한 사항 52.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 및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53. 환경오염신고 “128 환경신문고” 운영에 관한 사항 54. 환경오염사고 대비에 관한 사항 55. 악취, 먼지, 오존 등 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56. 환경사범 수사 및 송치에 관한 사항 57. 대기·수질 TMS구축 및 사업장 관리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환경보전과	58. 민간 환경감시단 업무에 관한 사항 59.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 및 단속에 관한 사항 60. 환경생태탐방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61. 석면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62. 무인악취포집기 운영 등 관리에 관한 사항 63.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 64. 악취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65.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6.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관련 영업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7.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8.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설계·시공업 및 관리업에 관한 사항 69.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운영에 관한 사항 70.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사항 71.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72.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 73. 연수의제21실천협의회 추진에 관한 사항 74. GCF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75.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에 관한 사항 76. 수질오염 방제에 관한 사항 77. 승기천 관련 예산 수립 등 관리 총괄 78. 승기천 청소 및 수질관리 (모니터링) 79. 승기천 환경정화, 걷기대회 등 행사 80. 해안오염 방제에 관한 사항 81. 수경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82. 물 수요관리에 관한 사항 83. 환경책임보험 적용대상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p>건설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설행정의 종합 및 기획에 관한 사항 2. 국·공유재산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도로·하천·구거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관리에 관한 사항 5. 건설기계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건설기계 대여업 관리에 관한 사항 7.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사항 8. 전문건설업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골재채취업에 관한 사항 10. 시설동원(일반토지, 건설업체, 중기정비업체)에 관한 사항 1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사항 12.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계약, 지출에 관한 사항 13. 노점상 단속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4. 노상적치물 단속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5. 도로 및 건설공사 계획수립 (도로폭 20미터 이하)에 관한 사항 (송도국제도시 제외) 16. 토목, 건설공사의 시행 및 유지관리(도로폭 20미터 이하)에 관한 사항 (송도국제도시 제외) 17. 20미터 이하 도로의 노선인정과 폐지변경에 관한 사항 18. 20미터 이하 도로 노면 및 전체도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송도국제도시 제외) 19. 도로의 안내표지판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송도국제도시 제외) 20. 도로의 안내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 (송도국제도시 제외) 21. 사도 개설허가에 관한 사항 (송도국제도시 제외) 22. 도시계획시설중 도로의 매수청구에 대한 매수여부 결정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23. 지하철도(보도 포함)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송도국제도시 제외)

부서명	분 장 사 무
건설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24. 보행자전용도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송도국제도시 제외) 25.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6. 도로굴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27. 공동구 관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8.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9. 공동구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30. 도로 및 가로정비(도로제설포함)에 관한 사항 31. 건설공사용 자재 및 기구 출납보관에 관한 사항 32.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공사설계 시공감독에 관한 사항 33. 공공하수도설치, 개축 및 수선공사에 관한 사항 (송도국제도시 제외) 34. 하수종별 책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5. 하수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 36. 하수사용 계량기 설치 및 교체에 관한 사항 37.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및 집계에 관한 사항 38. 지하수 개발에 관한 사항 39. 지하수 계측기 설치 및 교체에 관한 사항 40. 배수설비설치신고 및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송도국제도시 제외) 41. 승기천 하상 정비, 준설, 차집 찬널 정비, 하천 시설물 정비 42.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3. 자전거이용시설(자전거도로 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송도국제도시 제외) 44. 자전거이용활성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5. 주민자전거(공유자전거) 운영에 관한 사항 46. 자전거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7.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8. 무단방치자전거 정비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9. 도로조명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송도국제도시 제외)

부서명	분 장 사 무
건설과	50. 지하차도 전기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송도국제도시 제외) 51. 보도육교 전기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송도국제도시 제외) 52. 보도육교 전기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3. 전기공사법에 관한 사항 (송도국제도시 제외) 54. 전기공사업법에 관한 사항 55. 지하수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6.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위탁업무(오수중계펌프장)에 관한 사항 57. 개별 지하시설물 관리(지하안전 영향 평가) 58. 그 밖에 도시교통국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p>건축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물 등기필 정리에 관한 사항 2. 건축물대장 전산화에 관한 사항 3.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철거에 관한 사항 (공원, 녹지, 도로, 하천, 구거 및 국공유지 제외) 4.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개발제한구역 포함) 5. 건축신고 및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개발제한구역 포함) 6. 향측 업무에 관한 사항 7. 위법건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8. 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사항(기계식주차장 제외) 9. 건축행정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10.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개발제한구역 포함) 11. 건축시공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2. 건축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3.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14. 용벽 및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사항 15. 시설(건물, 토지)동원에 관한 사항 16.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17.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와 관련한 사항(舊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18.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점검 사항 19. 전문가와 함께하는 건축행정서비스에 관한 사항 20. 건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1. 간단한 도면 대행 서비스에 관한 사항 22.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정정에 관한 사항 23. 주거급여 사업에 관한 사항 24.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5. 기존주택전세임대, 다가구매입임대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26.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에 관한 사항 27.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에 관한 사항 28. 건축물관리대장 관리(아파트 이외의 건축물) 29. 건축물관리대장 공용발급에 관한 사항 30. 건축물유지관리 점검(정기·긴급)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p>건축과</p>	<p>31.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에 관한 사항 32. 건축물 해체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3.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4. 건축물생애이력 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5. 건축물 멸실 신고에 관한 사항 36.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사항</p>

부서명	분 장 사 무
도시주택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택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따른 주택 재건축·재개발에 관한 사항 3.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송도국제도시 제외) 4. 아파트 관리주체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송도국제도시 제외) 5.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 분양승인에 관한 사항 7.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8. 공동주택 관리실태 지도·점검(송도국제도시 제외) 9. 공동주택 분쟁조정 및 민원처리(송도국제도시 제외) 10. 공동주택 계약업무 관련 법률자문(송도국제도시 제외) 11. 공동주택 내 공사 관련 사업비 적정성 자문 12. 임대사업자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에 관한 사항 13. 임대주택 분양전환허가 및 매각신고에 관한 사항 14.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5. 임대조건신고 및 조건변경에 관한 사항 1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점검 사항 17. 공동주택 하자보수증권 관리에 관한 사항(송도국제도시 제외) 18. 아파트부설주차장 개방지원에 관한 사항 19. 원도심 지원사업 발굴 및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20. 공동주택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21.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22.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에 관한 사항 23. 건축물관리대장 관리(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부서명	분 장 사 무
도시계획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등에 관한 사항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5.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 7. 도시계획조례에 관한 사항 8.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도시계획 통계에 관한 사항 10.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1.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2.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13. 불법 개발행위 행정처분 및 사고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5.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16.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사항 17.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등에 관한 사항 18. 기타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사항 19. 온천 개발에 관한 사항 20. 도시개발조합설립 인가 신청에 관한 사항 21. 도시개발사업시행자(변경) 지정에 관한 사항 22.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 및 고시에 관한 업무 23.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변경) 인가에 관한 업무 24.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공사 감리감독에 관한 사항 25.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26.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7.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 징수·교부 및 체납액 정리에 관한 사항 28. 토지구획 사업완료 환지증명원(예정지, 확정) 발급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도시계획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27.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 징수·교부 및 체납액 정리에 관한 사항 28. 토지구획 사업완료 환지증명원(예정지, 확정) 발급에 관한 사항 29. 옥외광고물 종합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30. 옥외광고물 신고 및 허가, 연장에 관한 사항(송도동 제외) 31.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실시 및 위탁에 관한 사항(송도동 제외) 32. 옥외광고업의 신고 및 지도, 관리에 관한 사항 33. 옥외광고업 등록업체 관리에 관한 사항 34.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35. 옥외광고물 심의에 관한 사항 36. 옥외광고심의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7. 현수막 게시대 및 게시판 설치,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송도동 제외) 38.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에 관한 사항(송도동 제외) 39.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에 관한 사항(송도동 제외) 40.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에 관한 사항(송도동 제외) 41. 옥외광고물 위반에 관한 사항(송도동 제외) 42.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3. 옥외광고물 폐기물처리에 관한 사항 44. 도시경관사업에 관한 사항 45. 경관조례에 관한 사항 46.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 47. 개별 지하시설물 관리(지하안전 영향 평가)

부서명	분 장 사 무
공원녹지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녹지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성에 관한 사항 2. 영림계획의 인가, 변경명령 및 사업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 3. 조림사업 추진 및 육림관리에 관한 사항 4. 산불방지 대책 및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5. 산림병충해 방제에 관한 사항 6. 천연림 보육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7. 임목벌채 등 산림훼손 허가와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8. 산지전용 허가와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9.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10. 입산신고에 관한 사항 11. 지역 공동산화경방활동에 관한 사항 12. 부정입산물 단속 등 입산물 반·출입 통제에 관한 사항 13. 녹지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가로수 식재 보호에 관한 사항 15. 사방사업에 관한 사항 16. 도시녹화 추진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17. 구 단위 도시녹화 추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8. 도시녹화 추진 기술지도 및 묘목, 자재 등 확보 공급에 관한 사항 19. 산림동원에 관한 사항 20. 보행자전용도로의 수목과 시설물에 관한 사항 21. 일반(경관)광장의 수목과 시설물에 관한 사항 22. 시민참여 녹화사업 및 푸른 마을 가꾸기 사업에 관한 사항 23. 마을쉼터 조성 및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 사업에 관한 사항 24. 학교 주변 녹화추진에 관한 사항 25. 교통섬 녹화 및 가로녹지 조성에 관한 사항 26. 도시림 조성 및 관리 27.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 녹지)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8.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의 위탁 29. 도시공원, 녹지의 사용 및 점용허가 및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공원녹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 도시공원 및 녹지의 입장료, 사용료, 점용료 및 관리위탁료 징수에 관한 사항 31. 녹지활용계약 및 녹화계약 32. 도시공원 및 녹지 협의 관련 사항 3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 등의 위반자 처분에 관한 사항 (단, 미조성 도시공원 및 녹지내 불법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에 의해 처리 되어야할 부분은 제외한다.) 34. 도시공원, 녹지 GIS(지리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35. 도시공원 및 녹지의 설치에 관한사항 36. 공원 재조성(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37. 공원내 체육시설의 설치·개보수(증축)·변경, 리모델링,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38. 도시공원, 녹지 채권 발행에 관한 사항 39. 미조성 도시공원, 녹지의 매수청구에 관한 사항 40. 미조성 도시공원, 녹지의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사항 41. 도시공원 조성계획의 입안(도시자연공원 제외) 42. 도시공원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43. 도시자연공원구역내 행위허가 44. 도시공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사무(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4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한 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및 손실보상 46. 도시공원대장 및 도시자연공원구역대장 작성 및 관리 4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 등의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48. 도시공원 및 녹지 공원 등 전기업무에 전반에 관한 사항 49. 공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50.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화장실 관리 51. 도시공원 및 녹지내 수경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52. 소나무류의 이동에 따른 허가와 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 53. 연수둘레길 조성·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공원녹지과	54. 등산로 정비·보수·관리에 관한 사항 55. 산림의 생태적 복원에 관한 사항 56.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의 관리 57. 보안림의 지정, 지정해제, 지정의 고시, 관리에 관한 사항 58. 도시계획시설(공원: 묘지공원 제외, 녹지, 일반·경관 광장)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신청 59.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안건 제출 6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 기준 도시자연공원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거 신규로 증가된 근린공원 종합계획 및 공원 조성, 관리에 관한 사항 61. 도시텃밭 운영에 관한 사항 62. 승기천 유해식물 등 잡초제거, 초화류 식재 지원 63. 승기천 수목 및 녹지관리에 관한 사항 64. 개별지하시설물 관리(지하안전 영향 평가)

부서명	분 장 사 무
공간정보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사항 2.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3.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4. 부동산중개업 관련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5.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휴·폐업, 이전신고 처리 6.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에 관한 사항 7. 연수구 주토피아 운영에 관한 사항 8.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9.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조사·단속 사법경찰관리 직무집행에 관한 사항 10.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에 관한 사항 11.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에 관한 사항 12.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관한 사항 13.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4. 개별공시지가 관련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15. 개별공시지가 전산관리에 관한 사항 16.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발급에 관한 사항 17.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9.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사항 20.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21.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22. 토지거래계약 허가에 관한 사항 23. 토지거래계약허가 사후관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4. 토지거래계약허가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5. 토지거래계약허가 소송수행 및 신고포상금제 운영에 관한 사항 26. 외국인 토지취득에 관한 사항 27. 외국인 토지취득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8. 부동산 실명법에 관한 사항 29. 부동산 실명법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30.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파악에 관한 사항 31. 개발부담금 조사·산정에 관한 사항 32.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33. 개발부담금 관련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34. 지적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5. 이동지 검사 및 정리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공간정보과	<p>36.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업무에 관한 사항</p> <p>37. 토지분할 허가에 관한 사항</p> <p>38. 지적복구에 관한 사항</p> <p>39. 지적장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p> <p>40. 지적통계 업무에 관한 사항</p> <p>41. 지적기준점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p> <p>42. 축척변경 사업에 관한 사항</p> <p>43.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정리에 관한 사항</p> <p>44.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관한 사항</p> <p>45. 지적 및 측량에 관한 사항</p> <p>46.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관한 사항</p> <p>47.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선정에 관한 사항</p> <p>48.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수립 및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p> <p>49. 지적재조사측량 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p> <p>50.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p> <p>51. 지적재조사 사업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관리에 관한 사항</p> <p>52.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p> <p>53. 조정금 정산에 관한 사항</p> <p>54. 지적재조사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p> <p>55. 지적재조사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p> <p>56. 지적재조사 측량에 관한 사항</p> <p>57. 지적공부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p> <p>58. 지적전산 오류 정비</p> <p>59.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에 관한 사항</p> <p>60. 도시계획도면 관리에 관한 사항</p> <p>61. 토지대장 관리 및 발급에 관한 사항</p> <p>62. 토지(임야)대장 소유권 정리에 관한 사항</p> <p>63. 토지 소유자 주소등록에 관한 사항</p> <p>64. 국가소송(미등기 토지)에 관한 사항</p> <p>65.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자료제공에 관한 사항</p> <p>66.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에 관한 사항</p> <p>67.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대상지 선정에 관한 사항</p> <p>68. 좌표변환을 위한 공통점 선정에 관한 사항</p> <p>69. 세계측지계 좌표측량에 관한 사항</p>

부서명	분 장 사 무
공간정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70.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데이터 관리에 관한 사항 71.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관한 사항 72.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관리 73. 도로명 시설물 일체조사 및 정리 74. 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 운영 및 관리 75. 새주소 정착 및 활용 홍보 76. 도로명주소 고지·고시에 관한 사항 77. 상세주소 부여에 관한 사항 78. 국가기초구역 부여·관리에 관한 사항 79. 국가지점번호 부여·관리 및 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80. 주소정보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1. 사물주소 부여·관리에 관한 사항 82. 주소체계 고도화 추진에 관한 사항 83. 도로명주소 안내도 작성에 관한 사항 84. 부동산거래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85. 부동산거래 신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 86. 부동산거래 신고서 확인 및 신고필증 발급에 관한 사항 87. 부동산거래 가격적정성 진단, 세부자료입력에 관한 사항 88. 부동산거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89. 부동산 계약서 검인업무에 관한 사항 90. 국토정보시스템 자료제공에 관한 사항(정책정보제공) 91. 개인별토지소유현황조회(조상땅 찾아주기) 92. 주택임대차신고제운영(업무총괄, 시스템 운영등) 93. 주택임대차신고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94. 주택임대차신고 가격적정성 진단 및 정밀조사에 관한 사항 95. 지적분야 공간정보 구축에 관한 사항 96. GIS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97. 4차 산업혁명 관련 공공서비스 과제 발굴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98. 소통플랫폼 구축 99. 공공데이터 제공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0. 빅데이터 분석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1. 스마트시티 조성 및 활성화 계획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교통행정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통행정 종합계획 수립 2. 교통체계관리(TSM) 추진 3. 교통관련 소규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사항 6.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7. 공영(노상·노외)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 8. 민영주차장 설치 신고처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9. 공영주차장 설치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0. 장·단기 주차시설 확충계획 투자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11.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관한 사항 12. 이면도로 주차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3. 도시계획시설 중 주차장의 매수청구에 대한 매수여부 결정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14. 교통영향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 15. 건축물부설주차장 개방지원에 관한 사항 16.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 17.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개선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18.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19. 차 없는 거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사항 21.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관한 사항 2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23. 물류창고업에 관한 사항 24. 교통불편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 25. 교통량 조사에 관한 사항 26.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에 관한 사항 27.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교통행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2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차량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29. 자동차 대여사업에 관한 사항 30. Green Parking 사업에 관한 사항 31. (과년도) 체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징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32. (과년도) 체납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33. (과년도) 체납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검사지연) 징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34. 위 31. 32. 33.호와 관련한 압류·해제 35. 법령위반 차량 과태료 처분에 관한 사항 36.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이한 의견 제출 통보 및 과태료 감경 부과에 관한 사항 37. 자동차 과태료 관련 압류 및 해제등록 38. 개별 지하시설물 관리(지하안전 영향 평가)

부서명	분 장 사 무
차량민원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시간제 계약직·교통서포터즈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고정형·차량형 CCTV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온라인 교통불편민원 상담 5. 주정차위반 단속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6. 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사항 7. 견인사업소 지정·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8. 기계식주차장 설치에 따른 건축협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자동차 점검 및 정비명령 등(사업용자동차 지도점검 제외) 10.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행위단속 및 조치(고발, 정비명령)에 관한 사항 11. 불법개조 자동차에 대한 원상복구 및 고발에 관한 사항 12. 의무보험 미가입자 가입촉구 및 가입사실 증명 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 1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 14. 자동차 강제처리에 관한 사항 15.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정비업·해체재활용업) 관리 1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범칙금 및 검찰 송치에 관한 사항 17. 무단방치 자동차 범칙금 및 검찰 송치에 관한 사항 18.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 19. 자동차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에 대한 지정 취소 및 사업정지 명령에 관한 사항 20. 자동차 등록 원부 비치 관리에 관한 사항 21. 신규등록 거부에 관한 사항 22. 자동차등록 번호판 탈·부착 및 봉인에 관한 사항 23. 자동차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사항 24.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에 관한 사항 25. 자동차등록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사항 26. 자동차 검사, 자동차 점검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차량민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27. 자동차등록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28. 자동차 멸실 인정서 발급에 관한 사항 29. 자동차 변경등록 · 이전등록 · 말소등록에 관한 사항 30. 자동차 신규등록 31. 자동차 등록증 교부 32. 자동차 경정등록 33. 자동차 저장권 변경 · 등록 · 말소 34. 자동차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35. 자동차 검사 명령에 관한 사항 36. 이륜자동차 사용정지 명령에 관한 사항 37. 이륜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항 38. 자동차 등록 지연 과태료 부과, 징수, 결손처분에 관한사항 39. 자동차 과태료 관련 압류 및 해제등록 40. 법령위반 차량 과태료 처분에 관한 사항 41.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이한 의견 제출 통보 및 과태료 감경 부과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총 무 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식행사, 의전에 관한 사항 2. 구민의 날 지원 및 구민상 포상에 관한 사항 3. 당직, 직원복무 및 청사방호(청원경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청원경찰 임용에 관한 사항 5.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6. 직원복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사항 8.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9. 직원 휴양시설(콘도) 운영에 관한 사항 10. 영상회의실, 대·소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11. 국경일 등 태극기 관리에 관한 사항 12. 직장 동호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직장 민방위 및 자체 예비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4.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직원 및 간부공무원 비상연락(소집)에 관한 사항 16. 인사제도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18. 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 19. 공무원 보수에 관한 사항 20. 신원조사 의뢰에 관한 사항 21. 특별사법경찰관리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22.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훈련성적평정 및 가점평정에 관한 사항 23. 공무원 교육에 관한 사항(공무원 시책교육 포함) 24. 공무원 임용시험 요구, 특별임용 및 전직시험 관련 사항 25. 공무원증 발급, 공무원 재직·경력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26. 공무원 건강진단 및 4대 보험 업무에 관한 사항 27. 공무원 비밀취급 인가에 관한 사항 28. 공무원연금에 관한 사항 29. 공무원표창에 관한 사항 30.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 31. 비공무원(공무직, 기간제근로자) 현원 관리에 관한 사항 32. 비공무원 인사관리(직무·채용·복무·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33. 기간제 근로자 종합 운영 계획 수립

부서명	분 장 사 무
총 무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34. 비정규직 실태조사 및 정규직 전환 추진 35.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36. 공무원 및 공무원직 노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7. 해당 자치단체 및 산하기관 노무자문 및 상담 38. 구청사 청소에 관한 사항 39. 구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40. 구 청사 소방에 관한 사항 41. 구청사의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등에 관한 설계 및 공사 시공감독 업무에 관한 사항 42. 동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시공 감독업무에 관한 사항 43. 구청사 사무실 배치·조정에 관한 사항 44. 연수구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5. 그 밖에 자치행정국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p>자치행정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2.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단체 등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사회단체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구 행정실적 평가 관리에 관한 사항 7. 새마을 운동조직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8. 시장 및 구청장 초도방문에 관한 사항 9. 여론 및 동향파악에 관한 사항 10.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1. 주요시책 및 당면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 12. 명절연휴 종합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13. 북한이탈주민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14.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5. 행정서비스현장 운영에 관한 사항 16.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 17. 과거사 진실규명에 관한 사항 18. 행정구역의 위치·명칭 및 구역조정에 관한 사항 19.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0. 반상회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21. 통·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22. 적십자회비 모금에 관한 사항 23. 구민소통(주민참여) 계획 수립·총괄 조정 24. 소통 과제 발굴 및 추진 25. 구민·공무원 제안에 관한 사항 26.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7. 주민자치회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8. 주민자치회 위원 위·해촉에 관한 사항 29. 주민총회(주민자치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0. 동 주민자치사업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 31. 주민자치 교육에 관한 사항 32. 주민자치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3.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총괄

부서명	분 장 사 무
<p>자치행정과</p>	<p>34.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사항 35.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 36. 동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관한 사항 37. 민관협치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추진 38. 민관협치체계 구축 39. 공무원 및 주민 협치 역량 강화 40. 지역사회 민간자원 연계에 관한 사항 41. 마을공동체 사업 총괄 42.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3.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형성에 관한 사항 44.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에 관한 사항 45. 마을공동체 자원조사·관리·협력에 관한 사항 46.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7. 마을공동체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8.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p>

부서명	분 장 사 무
안전관리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수립 집행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관리 총괄 업무에 관한 사항 (개별 지하시설물 관리 등은 소관부서에서 수행) 4.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5. 재난대비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6. 재난대비 훈련실시에 관한 사항 7. 재난상황종합관리 및 평시보고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재난대비물자·자원·장비과약 및 재난단계 규모·유형별 동원계획 수립 운영에 관한 사항 9.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10. 인적재난의 사고수습에 관한 사항 11. 제3종 시설물 안전관리 총괄 12. 재난예방을 위한 특별·긴급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지도 13.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관리 14. 재해예방 및 재해응급대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15. 재난관리실태 공시에 관한 사항 16. 자연재난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 17. 재해복구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8. 방재계획의 수립 집행에 관한 사항 19. 재해방지를 위한 출동명령 등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 20.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1.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22. 풍수해보험 가입·운영에 관한 사항 23.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4. 재해지도 제작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5. 재해발생예상시설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26.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사항 27.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28. 구 산하기관(부서)의 재난관리행정에 대한 지도에 관한 사항 29. 국가기반시설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안전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 국제안전도시 공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1. 안전문화 활동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2.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3. 재난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4. 안전점검의 날 등 행사 및 캠페인에 관한 사항 35. 유선 및 도선업무 안전관리 및 지도에 관한 사항 36. 그 밖에 재난예방행정에 관한 사항 37. 방범취약지 야간 순찰에 관한 사항 38. 재해구호에 관한 사항 39. 재해구호 물자의 출납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0. 재난안전관리정책 총괄·조정 41. 재난안전관리 및 재해대책의 수립, 집행에 관한 사항 42. 자연·사회 재난 대응 총괄 43. 재난 매뉴얼 통합관리 44. 재난안전교육 총괄 및 훈련, 홍보 45. 안전대비 현장순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6. 민방위업무의 운영에 관한 사항 47. 민방위 시설장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8. 인력동원에 관한 사항 49. 핵 및 화생방 방어에 관한 사항 50. 민방위 및 비상사태에 관한 사항 51. 충무계획 작성 및 조정통제에 관한 사항 52. 을지연습에 관한 사항 53. 인력동원 실제 훈련에 관한 사항 54. 민방위대원 교육 및 민방위훈련에 관한 사항 55. 민방위 재난 통제에 관한 사항 56. 민방위대 조직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7. 주민신고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58. 민방위대 교육 강사에 관한 사항 59. 민방위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60. 사회복지무요원관리에 관한 사항 61. 그 밖에 민방위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안전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62. 전시병무업무 63. 행정정보통신시스템 종합개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64. 행정정보통신시스템(IP-교환기, 백본스위치, 전송장비, 보안장비 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5. 행정정보통신시스템(전용회선 등)의 통합 관리에 관한 사항 66. 방송시설 운영 및 행사(방송)지원에 관한 사항 67.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사항 68. 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설계검도에 관한 사항 69.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70. 공공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 감독 업무(신축, 증축, 개축, 보수 등)에 관한 사항(정보통신분야) 71. 네트워크 보안 정책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2.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3. 정보통신망(유선, 무선, 센서망 등)고도화에 관한 사항 74. 인터넷전화시스템 고도화에 관한 사항 75. CCTV설치 종합계획수립 및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76. 연수구 홍보전광판(문학경기장 입구, 구청사거리, 청학사거리)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77. 연수구 공공와이파이 구축에 관한 사항 78. 도시통합운영센터 모니터링 용역에 관한 사항 79.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80. 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관련 사항 81. 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 전담인력 선임, 위촉 등에 관한 사항 82. 중대시민재해 법령상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문화체육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예술 행사에 관한 사항 2. 연수구 예술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 3. 구립예술단 운영에 관한 사항 4. 종무(종교) 업무에 관한 사항 5. 공연장 등록 및 공연에 관한 사항 6.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에 관한 사항 7.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일반에 관한 사항 8. 문화가 있는 날 운영 9. 공연재해대처계획 신고(변경 신고)에 관한 사항 10.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1. 문화도시 지정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2. 문화도시 자원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3. 생활문화시설(복합문화시설 포함) 조성 및 운영 사항 14. 연수구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15. 야외음악당(문화공원) 대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연수구 주최 축제의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17. 문화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19. 관광행정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20. 연수관광클러스터 구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1. 관광사업 등록관리(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야영업, 관광편의시설업, 유원시설업, 기타 유원시설업) 22. 관광통계 관리 23. 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4. 능허대공원 사신선 및 능허대지(시지정기념물 8호) 관리에 관한 사항 25. 연수구 구사 편찬에 관한 사항 26. 지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7. 지방문화원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28. 영화관 등록 및 상영에 관한 사항 29. 출판사 및 인쇄업 신고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문화체육과	<p>3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의 신고 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p> <p>3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의 허가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p> <p>3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령에 의한 영업의 신고·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p> <p>33. 연수구 체육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p> <p>34. 유소년 스포츠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p> <p>35. 구청장배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에 관한 사항</p> <p>36. 구민씨름대회 지원에 관한 사항</p> <p>37. 전국체전 등 각종 대회 및 선수단 지원에 관한 사항</p> <p>38.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p> <p>39. 우수장애인 선수 지원에 관한 사항</p> <p>40. 용담공원 내 씨름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p> <p>41. 체육시설업 신고에 관한 사항</p> <p>42.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에 관한 사항</p> <p>43.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p> <p>44.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p> <p>45. 노인건강 체조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p> <p>46. 청사 내 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p> <p>47. 체육진흥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p> <p>48.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p> <p>49. 선학체육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p> <p>50. 공원(7개소) 내 체육시설 및 동춘다누리 체육센터 총 19개소의 관리 · 운영에 관한 사항 (대학공원, 문화공원, 용담공원, 양지공원, 솔안공원, 연수체육공원, 해찬솔공원)</p>

부서명	분 장 사 무
교육지원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 2.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 3.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5.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6. 교육복지우선지역 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7. 취학사무에 관한 사항 8. 각급 학교 표창 지원에 관한 사항 9. 연수구 장학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교·지역사회 연계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11. 지역교육사업을 위한 학교 및 교육청 업무 지원 12. 교육국제화특구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13. 해외우호교류도시와의 학생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14. 영어체험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5.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6.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7. 평생교육기관(시설)과의 프로그램운영 및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8.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에 관한 사항 19.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 20. 평생학습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1. 평생교육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2. 아시아·태평양 학습도시연맹(APLC) 운영에 관한 사항 23. 북카페(The Story) 운영에 관한 사항 24. 그 밖에 평생학습도시 발전과 관련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홍보미디어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홍보기획, 보도, 미디어활동, 통신지원에 관한 사항 2. 구정·시책 보도지원에 관한 사항 3. 구정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 4. 한국지역진흥재단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5. 대언론 구청장 인터뷰 및 홍보에 관한 부서요구사항 검토 6. 각종 홍보물 제작 및 보존 관리, 배부 7. 구정 홍보물(화보·소식지·영상물·뉴스 제작 등) 발행 배부 8. 홍보·미디어 메커니즘 및 시스템에 관한 사항 9. 구의 상징(CI, BI) 제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고 및 고시, 시정 홍보용 게시판 관리 11. 신문 및 방송 보도와 관련한 홍보에 관한 사항 12. 국·시정 및 구정 홍보에 관한 증장기발전계획 수립 13. 스튜디오, 인터넷방송실, 구정홍보실, 사진실, 기자실 운영 14. 국어책임관제 운영 및 국어사용 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 15. 인터넷 구정홍보계획의 총괄 16. 구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사항 유지·관리 18.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운영에 관한사항 19. 지역정보화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0. 행정정보화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1. 행정정보시스템(새울행정시스템, 온나라시스템 등) 운영에 관한 사항 22. 전산장비(PC, 프린터, 스캐너 등) 도입 및 유지보수 지원에 관한 사항 23. 주전산기(공통기반서버, KRAS서버 등) 및 각종서버 운영에 관한 사항 24. 구내 정보통신망(LAN, WAN구간) 회선 관리에 관한 사항 25. 네트워크장비(백본, 라우터 등)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6.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27. 정보보호시스템(VPN, F/W, IPS, 유해차단 등) 구축 및 운영관리

부서명	분 장 사 무
홍보미디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28. U-컨텐츠 서비스 모델 개발 및 운영 29. 무선인터넷(Wifi)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0. 정품 SW 및 우수정보시스템 보급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31. 구민 및 공무원 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 32. 통계행정의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33. 통계자료의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34. 각종 통계조사(인구주택, 농림어업, 사업체 등)에 관한 사항 35. 인터넷방송국시스템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36. 정보자원(EA) 및 전자정부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37. 구정홍보 문자서비스 운영 38. 미디어매체 홍보 기획 및 관리 39. 마을방송국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0. 마을미디어 활동가 지원에 관한 사항 41. 마을미디어활동을 위한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2. 마을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기획에 관한 사항 43. 마을미디어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4. 마을미디어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45. 마을미디어 육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6. 마을방송 송출 채널 운영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민원여권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각종문서 수발·분류에 관한 사항 2. 관인관수에 관한 사항 3. 민원사무(처리)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민원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민원행정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 민원1회 방문처리에 관한 사항 8. 민원(방문, 전화, 인터넷) 접수 및 심사에 관한 사항 9. 어디서나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10. “정부 24” 처리에 관한 사항 11. 민원상담 및 안내에 관한 사항 12. 친절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13. 외부고객만족(CS) 행정에 관한 사항 14. 미추홀 콜센터 연계 운영에 관한 사항 15.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16. 기록관리시스템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17. 행정정보공개 접수 통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19. 기록물 열람 및 대출에 관한 사항 20. 종합문서고 관리에 관한 사항 21. 기록물 관리 업무 지도·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2.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관한 사항 23.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24.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25. 행정사 업무에 관한 사항 26. 등록외국인 체류지 변경에 관한 사항 및 제증명 27. 결격사유조회에 관한 사항 28. 인감증명관리에 관한 사항 29. 여권발급에 관한 사항 30. 방문판매업 신규 신고 31. 방문판매업 변경 신고 및 휴·폐업·영업재개 신고 32. 방문판매 신고필증 재교부

부서명	분 장 사 무
민원여권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33. 통신판매업 신규 신고 34.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 및 휴·폐업 영업재개 신고 35. 통신판매업 신고필증 재교부 36. 통신판매 등록증 재교부 37. 전화권유 판매업 신규 신고 38. 전화권유 판매업 변경 신고 및 휴·폐업·영업재개 신고 39. 전화권유 판매 등록증 재교부 40. 이·미용사 면허증 신청 및 재교부 41. 조리사 면허증 교부 및 재교부, 기재사항 변경 42. 건설기계등록원부 발급 43. 등록면허세 신고분 고지서 발급 44. 인·허가 관련 지방세 체납 확인

【별표 3】

사업소(연수청학도서관) 사무분장표 (제14조 관련)

부서명	분 장 사 무
<p>연수 청학도서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서관 조성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발전 계획 및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4. 독서문화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독서문화 프로그램 및 행사 개발·기획·운영 나. 도서관 견학 및 이용교육 다. 독서대회, 전시회, 강연회 운영 등 5. 타 도서관 교류 및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6. 도서관 홍보에 관한 사항 7. 도서관 장서 및 이용 통계에 관한 사항 8. 도서관 평가와 개선에 관한 사항 9. 도서관 자원봉사자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0. 보조인력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도서관 업무 관련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2. 도서관 시설물 대관에 관한 사항 13. 자료 선정(구입, 기증) 및 수집, 정리에 관한 사항 14. 자료의 제적 및 폐기, 이관에 관한 사항 15. 자료의 수리 및 배가, 장서점검에 관한 사항 16. 자료의 대출 및 반납에 관한 사항 17. 신착·희망·예약·연체·분실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 18. 도서 상호대차 및 순회문고 운영에 관한 사항 19. 통합도서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20. 독서회원 관리에 관한 사항 21. 도서관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22. 도서관 운영 관련 장비 및 SW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3. 도서관 서버 및 네트워크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4. 도서관 전산 보안에 관한 사항 25. 도서관 당직근무 및 도서관 내의 복무관리 26. 도서관 관련 사무의 보조금 교부 및 결정통지, 감독 등에 관한 사항 27. 공무원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채용·관리에 관한 사항 28.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관리에 관한 사항 29. 도서관 예산 및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 30. 도서관 청사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31. 도서관 소관 차량 및 전산관리에 관한 사항 32. 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변경등록·폐관에 관한 사항 33. 물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34. 기간제근로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 관한 사항 35. 도서관 공인 관리에 관한 사항

【별표 4】

동장 직렬 및 직명(제12조 관련)

직 명	직 렬
옥련1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옥련2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선학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연수1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연수2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연수3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청학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동춘1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동춘2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동춘3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송도1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송도2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송도3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송도4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송도5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기획예산실) <u>기획예산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u></p>	<p><삭 제></p>
<p>제4조의2(송도관리단) <u>송도관리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u></p>	<p>제3조(송도관리단) ----- <u>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송도관리단 부단장은 지방행정 사무관 -----.</u></p>
<p><신 설></p>	<p>제4조(비전전략실) <u>비전전략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u></p>
<p>제5조의2(홍보미디어실) <u>홍보미디어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u></p>	<p><삭 제></p>
<p>제6조(행정안전국) <u>행정안전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 재무회계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 민원여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안전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u></p>	<p>제9조(자치행정국) <u>자치행정국장-----</u> ----- <u>자치행정과장, 문화체육과장, 교육지원과장, 홍보미디어과장-----</u> ----- -----.</p>
<p><신 설></p>	<p>제6조(기획경제국) <u>기획경제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기획예산과장, 경제지원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재무회계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u></p>

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
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위생정책과
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
건사무관으로 보한다.

제8조(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
로 보하고, 건설과장, 건축과장,
도시주택과장, 도시계획과장, 교통
행정과장, 공간정보과장은 지방행
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
로, 차량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
관으로 보한다.

제9조 (생 략)

제3장 직속기관

<신 설>

제10조, 제11조 (생 략)

<신 설>

<신 설>

제8조(도시교통국) 도시교통국장---

----- 공간정보과장, 교통
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
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
지사무관 -----.

제10조 (현행 제9조와 같음)

<삭 제>

제3장 직속기관

제11조, 제12조 (현행 제10조, 제11
조와 같음)

제4장 사업소

제13조(관장의 직급) 연수청학도서관
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
서사무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
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p><신 설></p> <p>제4장 하부행정기관</p> <p>제12조 (생 략)</p> <p>제13조(분장사무) 동에 두는 분장사 무는 “별표 3”과 같다.</p>	<p>제14조(분장사무) 관장의 분장 사무 는 "별표3"과 같다.</p> <p>제5장 -----</p> <p>제15조 (현행 제12조와 같음)</p> <p>제16조(분장사무) ----- -- “별표 5”와 -----.</p>
---	---

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칙(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p>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p>	<p>1. 제안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에 따라 기관(부서)별, 직급별, 직렬별 정원 조정하고자 함으로 효율적인 조직 운영 도모 <p>2. 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별 · 직급별 · 직렬별 정원 조정(별표)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이 재 호

2022. 10. 12.

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칙 제 761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직렬별 정원 (제2조 관련)

기관별 직렬별	계	구 본청	의회사무 기구	직속기관 (보건소)	사업소 (도서관)	동	복지담당 행정직 ¹⁾
합계	1006	638	23	89	26	230	11
정무직	1	1					
일반직	1000	632	23	89	26	230	11
3급	1	1					
행정	1	1					
4급	7	5	1	1			
행정	1	1					
기술	1			1			
행정·기술	5	4	1				
5급	59	32	2	9	1	15	
행정	22	14	2			6	
의무	5			5			
행정·사회복지	12	5				7	
행정·사서	1				1		
행정·보건	2	1		1			
행정·시설	9	9					
행정·환경	3	2				1	
행정·녹지·시설	1	1					
행정·보건·간호	1			1			
행정·사회복지·시설·환경	1					1	
보건·간호·약무·의료기술	2			2			
6급	230	162	5	16	9	38	1
행정	85	66	3		1	15	1
세무	16	16					
사회복지	19	4				15	
전산	2	1			1		

기관별 직렬별	계	구 본청	의회사무 기구	직속기관 (보건소)	사업소 (도서관)	동	복지담당 행정직 ¹⁾
공업	2	2					
녹지	4	4					
보건	6	4		2			
간호	3			3			
환경	1	1					
시설	18	18					
의료기술	1			1			
운전	3	3					
기계운영	1	1					
사무운영	2	1				1	
행정·전산	3	3					
행정·세무	3	3					
행정·사회복지	18	10	1			7	
행정·사서	6				6		
행정·공업	4	4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보건	3	2		1			
행정·환경	5	5					
행정·시설	8	7	1				
공업·시설	4	3			1		
시설·방재안전	1	1					
보건·간호	2			2			
약무·간호	1			1			
행정·공업·녹지	1	1					
행정·환경·공업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2			2			
보건약무간호의료기술	4			4			

기관별 직렬별	계	구 본청	의회사무 기구	직속기관 (보건소)	사업소 (도서관)	동	복지담당 행정직 ¹⁾
7급	303	211	9	23	7	53	1
행정	129	89	8		1	31	1
세무	12	12					
사회복지	36	17				19	
전산	4	4					
사서	5				5		
공업	8	8					
녹지	7	7					
수의	1	1					
보건	8	5		3			
의료기술	2			2			
간호	10	1		9			
환경	6	6					
방재안전	1	1					
시설	25	25					
방송통신	2	2					
운전	3	3					
기계운영	1	1					
행정·세무	3	3					
행정·사회복지	16	13				3	
행정·전산	2	2					
행정·사서	1				1		
행정·환경	2	2					
행정·수의	1	1					
행정·시설	5	5					
행정·통신	1		1				
시설·방재안전	2	2					
시설·사회복지	1	1					
보건·간호	5			5			
보건·간호·의료기술	2			2			
보건·의료기술·약무	2			2			

기관별 직렬별	계	구 본청	의회사무 기구	직속기관 (보건소)	사업소 (도서관)	동	복지담당 행정직 ¹⁾
8급	294	169	6	36	6	77	8
행정	116	65	2	2		47	8
세무	6	6					
사회복지	30	14				16	
전산	6	6					
사서	3				3		
속기	2		2				
공업	10	10					
녹지	4	4					
보건	8	5		3			
의료기술	4			4			
간호	21			21			
환경	3	3					
시설	23	23					
방재안전	2	2					
방송통신	3	3					
운전	5	1	1	3			
행정·사회복지	26	12				14	
행정·시설	3	3					
행정·사서	3				3		
행정·세무	2	2					
녹지·시설	1	1					
공업·시설	1	1					
행정·공업	1	1					
행정·환경	4	4					
행정·보건	2	2					
행정·방송통신	2	1	1				
보건·간호	3			3			

기관별 직렬별	계	구 본청	의회사무 기구	직속기관 (보건소)	사업소 (도서관)	동	복지담당 행정직 ¹⁾
9급	106	52		4	3	47	1
행정	29	13				16	1
세무	6	6					
사회복지	26	7				19	
사서	1				1		
녹지	1	1					
보건	3	1		2			
시설	6	6					
환경	1	1					
행정·사회복지	16	4				12	
행정·세무	4	4					
행정·시설	1	1					
행정·공업	1	1					
행정·녹지	1	1					
행정·수산	1	1					
행정·보건	4	2		2			
행정·사서	2				2		
시설·방재안전	1	1					
공업·시설	2	2					
연구직	1	1					
기록연구사	1	1					
별정직	4	4					
5급 상당	1	1					
행정·별정(비서)	1	1					
6급 상당	2	2					
행정·별정(비서)	2	2					
7급 상당	1	1					
행정·별정(비서)	1	1					

1) 복지담당 행정직 : 괄호() 표기된 숫자는 행정직 중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정원 수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훈령(발령)

제 명	주 요 내 용
<p>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p>	<p>1. 제안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시책 및 지역현안 수요를 반영한 인력 재배치 및 필요 인력정원 조정으로 효율적인 조직운영 도모 <p>2. 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 본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별표 1) ○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별표 2) ○ 직속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별표 3) ○ 사업소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별표 4) ○ 동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별표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이 재 호

2022. 10. 12.

인천광역시 연수구 훈령 제 332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별표 4”를 “별표 5”로 한다.

④ 사업소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표 5로 하고, 같은 표를 별지와 같이 하며,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구 본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제2조제1항 관련)

부서	직종	직급	정원	직 렬
합 계			638	
송 도 관 리 단	계		32	
	일반직	소계	32	
		4급	1	행정·기술1
		5급	1	행정·시설1
		6급	9	행정1, 시설4, 행정·공업1, 행정·보건1, 행정·환경·공업1, 녹지1,
		7급	12	행정3, 공업2, 녹지2, 시설3, 보건1, 환경1
		8급	7	행정2, 시설2, 행정·시설1, 공업1, 보건1
		9급	2	시설1, 공업·시설1
비 전 전 략 실	계		12	
	일반직	소계	12	
		5급	1	행정·시설 1
		6급	3	행정1, 시설1, 공업1
		7급	4	행정·시설2, 시설1, 공업1
		8급	3	행정1, 공업·시설1, 공업1
		9급	1	시설1
감 사 실	계		12	
	일반직	소계	12	
		5급	1	행정1(개방1)
		6급	7	행정5, 세무1, 행정·사회1
		7급	3	행정1, 시설1, 행정·시설1
		8급	1	행정1
		9급		

부서	직종	직급	정원	직 렬
기 획 예 산 과	계		21	
	일반직	소계	21	
		4급	1	행정·기술1
		5급	1	행정1
		6급	5	행정5
		7급	11	행정11
		8급	3	행정3
		9급		
경 제 지 원 과	계		18	
	일반직	소계	18	
		5급	1	행정1
		6급	5	행정3, 공업1, 행정·공업1
		7급	5	행정1, 공업2, 수의1, 행정·수의1
		8급	5	행정3, 공업2
		9급	2	행정·공업1, 행정·수산1
일 자 리 정 책 과	계		13	
	일반직	소계	13	
		5급	1	행정1
		6급	4	행정4
		7급	4	행정4
		8급	3	행정3
		9급	1	행정1

부서	직종	직급	정원	직 렬
재무회계과	계		15	
	일반직	소계	15	
		5급	1	행정1
		6급	5	행정2, 사무운영1, 운전2,
		7급	5	행정4, 운전1
		8급	3	행정2, 운전1
		9급	1	행정1
세무1과	계		26	
	일반직	소계	26	
		5급	1	행정1
		6급	11	세무10, 행정·세무1
		7급	5	세무5
		8급	5	행정1, 전산1, 세무3
		9급	4	세무1, 행정·세무3
세무2과	계		26	
	일반직	소계	26	
		5급	1	행정1
		6급	6	세무5, 행정·세무1
		7급	7	세무6, 행정·세무1
		8급	6	행정1, 세무3, 행정·세무2
		9급	6	세무5, 행정·세무1

부서	직종	직급	정원	직 렬
복 지 정 책 과	계		20	
	일반직	소계	20	
		4급	1	행정1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4	행정2, 사회복지2
		7급	7	행정1, 사회복지4, 행정·사회복지2
		8급	5	행정1,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2,
		9급	2	사회복지2
사 회 보 장 과	계		31	
	일반직	소계	31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4	행정1,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2
		7급	11	행정4, 사회복지4, 행정·사회복지3
		8급	12	사회복지6, 행정·사회복지6
		9급	3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1
노 인 장 애 인 과	계		24	
	일반직	소계	24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5	행정4, 행정·사회복지1
		7급	9	행정2, 사회복지3, 행정·사회복지4
		8급	6	행정2, 사회복지3, 행정·사회복지1
		9급	3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1

부서	직종	직급	정원	직 렬
여 성 아 동 과	계		26	
	일반직	소계	26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6	행정3, 사회1, 행정·사회복지2
		7급	9	행정3, 사회4 , 행정·사회복지2
		8급	8	행정4, 사회2 , 보건1, 행정·사회복지1
		9급	2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1
출 산 보 육 과	계		17	
	일반직	소계	17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4	행정·사회복지4
		7급	5	행정1, 시설·사회복지1,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2
		8급	5	행정2,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2
		9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청 소 행 정 과	계		19	
	일반직	소계	19	
		5급	1	행정·환경1
		6급	5	행정3, 행정·환경2
		7급	8	행정5, 환경2, 행정·환경1
		8급	4	행정2, 행정·공업1, 환경1
		9급	1	행정1

부서	직종	직급	정원	직 렬
위 생 정 책 과	계		18	
	일반직	소계	18	
		5급	1	행정·보건1
		6급	5	보건4, 행정·보건1
		7급	4	보건4
		8급	5	보건3, 행정·보건2
		9급	3	보건1, 행정·보건2
환 경 보 전 과	계		19	
	일반직	소계	19	
		5급	1	행정·환경1
		6급	5	환경1, 행정·환경3, 행정·공업1
		7급	5	행정1, 환경3, 행정·환경1
		8급	7	공업1, 환경2, 행정·환경4
9급	1	환경1		
건 설 과	계		27	
	일반직	소계	27	
		4급	1	행정·기술1
		5급	1	행정·시설1
		6급	6	행정1, 시설2, 기계운영1, 공업·시설2
		7급	13	행정3, 공업1, 시설7, 기계운영1, 운전1
		8급	6	공업2, 시설3, 행정1
9급				

부서	직종	직급	정원	직 렬
건 축 과	계		13	
	일반직	소계	13	
		5급	1	행정·시설1
		6급	4	시설1, 행정·시설1, 공업·시설1, 시설·방재안전1
		7급	3	시설2, 사회복지1
		8급	4	행정1, 시설2, 공업1
		9급	1	시설1
도 시 주 택 과	계		15	
	일반직	소계	15	
		5급	1	행정·시설1
		6급	3	시설3
		7급	4	시설4
		8급	5	시설3, 행정·시설2
		9급	2	행정1, 시설1
도 시 계 획 과	계		15	
	일반직	소계	15	
		5급	1	행정·시설1
		6급	4	행정1, 시설2, 행정·시설1
		7급	4	행정3, 공업1
		8급	5	행정1, 시설4
		9급	1	행정·시설1

부서	직종	직급	정원	직 렬
공 원 녹 지 과	계		19	
	일반직	소계	19	
		5급	1	행정·녹지·시설1
		6급	4	녹지3, 행정·공업·녹지1
		7급	5	녹지5
		8급	7	공업1, 녹지4, 시설·녹지1, 행정1
		9급	2	녹지1, 행정·녹지1
공 간 정 보 과	계		21	
	일반직	소계	21	
		5급	1	행정·시설1
		6급	6	시설3, 행정·시설3
		7급	8	행정1, 시설5, 전산1, 행정·시설1,
		8급	6	시설5, 방송통신1
9급				
교 통 행 정 과	계		17	
	일반직	소계	17	
		5급	1	행정·시설1
		6급	5	행정3, 시설1, 행정·세무1
		7급	5	행정2, 세무1, 행정·세무2
		8급	3	행정1, 시설2
9급	3	행정1, 시설2		

부서	직종	직급	정원	직 렬
차 량 민 원 과	계		20	
	일반직	소계	20	
		5급	1	행정1
		6급	3	행정2, 행정·공업1
		7급	5	행정4, 공업1
		8급	8	행정8
		9급	3	행정3
총 무 과	계		31	
	정무직		1	구청장1
	일반직	소계	26	
		3급	1	행정1
		4급	1	행정·기술1
		5급	1	행정1
		6급	7	행정5, 공업·시설1, 운전1
		7급	9	행정7, 시설1, 운전1
		8급	6	행정4, 시설2
		9급	1	공업·시설1
	별정직	소계	4	
		5급	1	행정·별정(비서요원)
		6급	2	행정·별정(비서요원)
		7급	1	행정·별정(비서요원)

부서	직종	직급	정원	직 렬
자 치 행 정 과	계		13	
	일반직	소계	13	
		5급	1	행정1
		6급	4	행정4
		7급	5	행정5
		8급	3	행정3
안 전 관 리 과	계		24	
	일반직	소계	24	
		5급	1	행정·시설1
		6급	5	행정2, 시설1, 행정·방송통신1, 행정·시설1
		7급	9	행정2, 시설1, 방송통신2, 시설·방재안전2, 방재안전1, 간호1
		8급	8	행정3, 전산1, 방송통신1, 행정·방송통신1, 방재안전2
9급	1	시설·방재안전1		
문 화 체 육 과	계		20	
	일반직	소계	20	
		5급	1	행정1
		6급	6	행정6
		7급	6	행정5, 행정·시설1
		8급	6	행정5, 공업1
9급	1	행정1		

부서	직종	직급	정원	직 렬
교 육 지 원 과	계		14	
	일반직	소계	14	
		5급	1	행정1
		6급	4	행정4
		7급	6	행정6
		8급	2	행정2
		9급	1	행정1
홍 보 미 디 어 과	계		18	
	일반직	소계	18	
		5급	1	행정1
		6급	4	행정1, 전산1, 행정·전산2
		7급	8	행정3, 전산3, 행정·전산2
		8급	5	전산4, 방송통신1
		9급		
민 원 여 권 과	계		22	
	일반직	소계	21	
		5급	1	행정1
		6급	4	행정3, 행정·전산1
		7급	7	행정7
		8급	7	행정7
		9급	2	행정2
	연구직	소계	1	
		연구사	1	기록연구사1

[별표 2]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제2조제2항 관련)

부 서	직 중	직 급	정 원	직 렬
합 계			23	
의 회	계		23	
	일반직	소계	23	
		4급	1	행정·기술1
		5급	2	행정2
		6급	5	행정3, 행정·사회1, 행정·시설1
		7급	9	행정8, 행정·통신1
		8급	6	행정2, 행정·통신1, 속기2, 운전1
		9급		

[별표 3]

직속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제2조제3항 관련)

부서	직종	직급	정원	직렬
합계			89	
보건행정과	계		21	
	일반직	소계	21	
		4급	1	기술1
		5급	5	의무4, 행정·보건1
		6급	4	행정·보건1, 보건·약무·간호·의료기술3
		7급	5	보건1, 간호1, 의료기술1, 보건·약무·의료기술2
		8급	5	행정1, 보건1, 의료기술1, 운전1, 간호1
		9급	1	행정·보건1
건강증진과	계		40	
	일반직	소계	40	
		5급	1	보건·간호·약무·의료기술1
		6급	6	보건1, 간호2, 약무·간호1 보건·간호·의료기술2
		7급	10	간호7, 보건1, 보건·간호2
		8급	23	보건2, 간호18, 보건·간호2, 운전1
9급				
질병관리과	계		21	
	일반직	소계	21	
		5급	2	의무1, 행정·보건·간호1
		6급	4	보건·간호2, 의료기술1, 보건·약무·간호·의료기술1
		7급	5	보건1, 간호1, 보건·간호2, 보건·간호·의료기술1
		8급	7	간호2, 의료기술3, 운전1, 보건·간호1
9급	3	보건2, 행정·보건1		

부서	직종	직급	정원	직렬
송도건강생활 지원센터	계		7	
	일반직	소계	7	
		5급	1	보건·간호·약무·의료기술1
		6급	2	보건1, 간호1
		7급	3	보건·간호1, 의료기술1, 보건·간호·의료기술1
		8급	1	행정1
		9급		

[별표 4]

사업소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제2조제4항 관련)

부서	직종	직급	정원	직렬
합계			26	
도서관	계		26	
	일반직	소계	26	
		5급	1	행정·사서1(개방1)
		6급	9	행정1, 행정·사서6, 행정·시설1, 전산1
		7급	7	행정1, 사서5, 행정·사서1
		8급	6	사서3, 행정·사서3
		9급	3	사서1, 행정·사서2

[별표 5]

동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제2조제5항 관련)

부서	직종	직급	정원	직렬
합계			230	
우 련 1 동	계		17	
	일반직	소계	17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3	행정1,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1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8급	5	행정3,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1
		9급	5	행정1,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2
우 련 2 동	계		17	
	일반직	소계	17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3	행정1,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1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8급	6	행정4,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1
		9급	4	행정1,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1
선 학 동	계		18	
	일반직	소계	18	
		5급	1	행정·사회복지·시설·환경1
		6급	3	행정1, 사회복지2
		7급	5	행정2, 사회복지3
		8급	4	행정3, 사회복지1
		9급	5	행정1,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2

부서	직종	직급	정원	직렬
연수1동	계		19	
	일반직	소계	19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4	행정1, 사회복지2, 사무운영1
		7급	5	행정2, 사회복지3
		8급	6	행정3,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1
		9급	3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1
연수2동	계		19	
	일반직	소계	19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3	행정1, 사회복지2
		7급	5	행정2, 사회복지3
		8급	6	행정4,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1
		9급	4	행정1,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1
연수3동	계		18	
	일반직	소계	18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3	행정1, 사회복지2
		7급	4	행정2, 사회복지2
		8급	4	행정2, 사회복지2
		9급	6	행정2,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2

부서	직종	직급	정원	직렬
청학동	계		19	
	일반직	소계	19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3	행정1, 사회복지2
		7급	5	행정2,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1
		8급	6	행정2,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2
		9급	4	행정2,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1
동춘1동	계		12	
	일반직	소계	12	
		5급	1	행정1
		6급	2	행정1, 사회복지1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8급	5	행정3, 행정·사회복지2
9급	1	행정1		
동춘2동	계		12	
	일반직	소계	12	
		5급	1	행정1
		6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7급	2	행정2
		8급	5	행정2,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2
9급	2	행정2		

부서	직종	직급	정원	직렬
동춘3동	계		11	
	일반직	소계	11	
		5급	1	행정·환경1
		6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8급	5	행정2, 행정·사회복지2, 사회복지1
		9급		
송도1동	계		13	
	일반직	소계	13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7급	3	행정2, 행정·사회복지1
		8급	5	행정4, 사회복지1
		9급	2	행정1, 사회복지1
송도2동	계		24	
	일반직	소계	13	
		5급	1	행정1
		6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8급	5	행정4, 사회복지1
		9급	2	행정1, 사회복지1

부서	직종	직급	정원	직렬
송도3동	계		29	
	일반직	소계	16	
		5급	1	행정1
		6급	2	행정1, 사회복지1
		7급	4	행정3, 사회복지1
		8급	6	행정6
		9급	3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1
송도4동	계		12	
	일반직	소계	12	행정1
		5급	1	행정·환경1
		6급	2	행정1, 사회복지1
		7급	2	행정2
		8급	4	행정3, 사회복지1
		9급	3	행정1, 행정·사회복지1
송도5동	계		14	
	일반직	소계	14	
		5급	1	행정1
		6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7급	3	행정2, 행정·사회복지1
		8급	5	행정2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2
		9급	3	행정2, 사회복지1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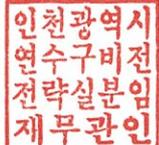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인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의 등록 및 폐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0월 12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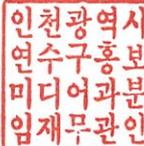
1. 공인 등록 및 폐기 사유: 부서 신설 및 부서명, 소속 직제 변경
2. 공인 등록 및 폐기일: 2022.10.12.(수)
3. 공인명 및 인영

등록공인 목록

공 인 명	공인(인영)	공인의 규격	비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전전략실 분임물품출납원인		1.8cm × 1.8cm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전전략실 분임재무관인		2.0cm × 2.0cm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전전략실 일상경비출납원인		1.8cm × 1.8cm	

공 인 명	공인(인영)	공인의 규격	비고
<p>인천광역시 연수구 기획예산과 분임물품출납원인</p>		1.8cm × 1.8cm	
<p>인천광역시 연수구 기획예산과 분임재무관인</p>		2.0cm × 2.0cm	
<p>인천광역시 연수구 기획예산과 일상경비출납원인</p>		1.8cm × 1.8cm	
<p>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행정과 분임물품출납원인</p>		1.8cm × 1.8cm	
<p>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행정과 분임재무관인</p>		2.0cm × 2.0cm	
<p>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행정과 일상경비출납원인</p>		1.8cm × 1.8cm	

공 인 명	공인(인영)	공인의 규격	비고
<p>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행정과 분임물품출납원인</p>		1.8cm × 1.8cm	
<p>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행정과 분임재무관인</p>		2.0cm × 2.0cm	
<p>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행정과 일상경비출납원인</p>		1.8cm × 1.8cm	
<p>인천광역시 연수구 교육지원과 분임물품출납원인</p>		1.8cm × 1.8cm	
<p>인천광역시 연수구 교육지원과 분임재무관인</p>		2.0cm × 2.0cm	
<p>인천광역시 연수구 교육지원과 일상경비출납원인</p>		1.8cm × 1.8cm	

공 인 명	공인(인영)	공인의 규격	비고
<p>인천광역시 연수구 홍보미디어과 분임물품출납원인</p>		1.8cm × 1.8cm	
<p>인천광역시 연수구 홍보미디어과 분임재무관인</p>		2.0cm × 2.0cm	
<p>인천광역시 연수구 홍보미디어과 일상경비출납원인</p>		1.8cm × 1.8cm	
<p>연수청학도서관장인</p>		2.1cm × 2.1cm	
<p>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청학도서관 물품관리관인</p>		2.0cm × 2.0cm	
<p>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청학도서관 물품출납원인</p>		1.8cm × 1.8cm	

공 인 명	공인(인영)	공인의 규격	비고
<p>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청학도서관 분임물품출납원인</p>		1.8cm × 1.8cm	
<p>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청학도서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p>		1.8cm × 1.8cm	
<p>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청학도서관 수입금출납원인</p>		1.8cm × 1.8cm	
<p>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청학도서관 일상경비출납원인</p>		1.8cm × 1.8cm	
<p>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청학도서관 재무관인</p>		2.0cm × 2.0cm	
<p>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청학도서관 분임재무관인</p>		2.0cm × 2.0cm	
<p>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청학도서관 지출원인</p>		2.0cm × 2.0cm	

공 인 명	공인(인영)	공인의 규격	비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청학도서관 징수관인		2.0cm × 2.0cm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청학도서관 채권관리관인		2.0cm × 2.0cm	

□ 폐기공인 목록

공 인 명	공인(인영)	공인의 규격	비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기획예산실 분임물품출납원인		1.8cm × 1.8cm	
인천광역시 연수구 기획예산실 분임재무관인		2.0cm × 2.0cm	
인천광역시 연수구 기획예산실 일상경비출납원인		1.8cm × 1.8cm	

공 인 명	공인(인영)	공인의 규격	비고
<p>인천광역시 연수구 홍보미디어실 분임물품출납원인</p>		<p>1.8cm × 1.8cm</p>	
<p>인천광역시 연수구 홍보미디어실 분임재무관인</p>		<p>2.0cm × 2.0cm</p>	
<p>인천광역시 연수구 홍보미디어실 일상경비출납원인</p>		<p>1.8cm × 1.8cm</p>	
<p>인천광역시 연수구 평생교육과 분임물품출납원인</p>		<p>1.8cm × 1.8cm</p>	
<p>인천광역시 연수구 평생교육과 분임재무관인</p>		<p>2.0cm × 2.0cm</p>	
<p>인천광역시 연수구 평생교육과 일상경비출납원인</p>		<p>1.8cm × 1.8cm</p>	

공 인 명	공인(인영)	공인의 규격	비고
<p>인천광역시 연수구 마을자치과 분임물품출납원인</p>		1.8cm × 1.8cm	
<p>인천광역시 연수구 마을자치과 분임재무관인</p>		2.0cm × 2.0cm	
<p>인천광역시 연수구 마을자치과 일상경비출납원인</p>		1.8cm × 1.8cm	
<p>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원순환과 분임물품출납원인</p>		1.8cm × 1.8cm	
<p>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원순환과 분임재무관인</p>		2.0cm × 2.0cm	
<p>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원순환과 일상경비출납원인</p>		1.8cm × 1.8cm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책 대상을 확대하고 경력단절 예방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시책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른 기존 조례 명칭 변경
- 인용 법의 전부개정에 따른 법안 정비(안 제1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 조례의 정의 ‘경력단절예방’ 규정 신설 (안 제2조 제3호)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예방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규정 신설 (안 제8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4,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으로,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을 “지속적인 발전”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을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로, “여러 가지”를 “제반”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경력단절예방”이란 여성이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으로, “수립하고”를 “세우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 특성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노동환경 조성 및 고용안정 보장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 ②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제4조”를 “제5조”로, “인천광역시연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로, “세우고”를 “수립하고 계획에 따른 사업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련단체의 장”을 “그밖의 법인이나 관련 단체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없는 한 적극 지원하여야”를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중전의 제2호) 중

“법 제10조제2항”을 “법 제13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으로 한다.

- 2.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사업
- 3.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
- 5. 경력 단절 여성등에 대한 지원사업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기관 및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위탁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인천광역시 연수구</u> <u>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u> <u>촉진에 관한 조례</u></p>	<p><u>인천광역시 연수구 여성의</u> <u>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u> <u>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u>」에 따라 <u>인천광역시연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u>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u>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u>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u>경력단절여성등</u>”이란 <u>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u>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p> <p>2. “<u>경제활동 촉진</u>”이란 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기업 등이 <u>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u></p>	<p>제1조(목적) ----- 「<u>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u>」-- <u>인천광역시 연수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u> ----- --- <u>지속적인 발전</u>----- ----- --.</p> <p>제2조(정의) ----- -----.</p> <p>1. ----- <u>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의</u> ----- ----- -----.</p> <p>2. ----- ----- <u>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u></p>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

<신 설>

3. 4. (생 략)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 노력하여야 한다.

하기 -----
-- 제반 -----
-.

3. “경력단절예방”이란 여성이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

4. 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 세우고-----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 특성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노동환경 조성 및 고용안정 보장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

<신 설>

제5조(시행계획 등) ①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인천광역시연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관련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

다.

②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등) ① -----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5조-----
-----인천광역시 연수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 수립하고 계획에 따른 사업을 -----.

② -----
----- 그밖의 법인이나 관련 단체장-----
-----.

③ -----
-----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 -----.

제6조(실태조사 등) ① -----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

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7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등의 진출 유망직종 및 구청장이 선정하는 여성고용업종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신설>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3.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사업

4. 법 제12조에 따른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사업

<신설>

5. (생략)

6.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삭제>

2.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사업

1. 법 제13조제2항-----
--

3.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예방 사업

<삭제>

5. 경력 단절 여성등에 대한 지원사업

4. (현행 제5호와 같음)

6.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원사업

② (생략)

<신설>

제8조 (생략)

진과 경력단절 예방-----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기관 및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위탁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9조 (현행 제8조와 같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 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2.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때에는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근로환경 개선 및 고용안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및 경력단절 현황과 전망
3.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주요 시책
4.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여성의 경력유지 및 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
2.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회적·문화적 인식 개선 사업
3. 성차별 없는 직장 환경 조성 사업
4. 그 밖에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인천광역시 연수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7조(지원사업)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상위법이 금년도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문에 대한 정확한 추계 예측이 어려움.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재정보호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작성자 : 연수구의회 윤혜영 의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고, 유실(遺失)·유기(遺棄)동물의 발생을 방지하는 등 동물의 생명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고자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구민은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참여하도록 함 (안 제3조, 제4조)
- 소유자 등은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하는 등 동물을 보호하고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는 책임이 있음을 명시함 (안 제5조)
- 동물학대방지과 동물복지증진을 위한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안 제6조)
-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물복지위원회를 설

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회구성 및 회의운영에 관하여 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발생시 30일 이내 변경 등록하도록 함(안제10조)
- 유기·유실동물 및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
- 유기·유실동물 및 학대받는 동물에 대한 구조·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소유자의 책임의식 강화 등을 위해 동물의 치료·보호에 든 비용을 해당 동물의 소유자가 부담하는 사항을 명시.(안 제14조부터 제16조)
- 유기·유실동물 및 학대받는 동물을 구조한 후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동물의 기증 및 입양을 받는 사람에게 비용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 길고양이 개체수 관리를 위한 중성화 수술 및 급식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18조)
- 사람과 동물의 안전한 공존을 위해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등을 위한 교육·홍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사업을 하는 민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와 제20조)
- 반려동물문화 정착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센터, 반려동물놀이터, 반려동물 일시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21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 「수의사법」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4,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고, 유실(遺失)·유기(遺棄)동물의 발생을 방지하는 등 동물의 생명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동물을 말한다.
2. “동물복지”란 일반적으로 인간이 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3. “반려동물”이란 법 제2조제7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서 정한 동물을 말한다.
4. “유실·유기동물”이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5. “소유자 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행령 제3조에서 정

하는 동물을 말한다.

7. “보호조치”란 유실·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8.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 증진 및 동물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참여와 협력) ① 구민은 법 제10조에 따라 동물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물복지와 생명존중 가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동물복지 및 동물보호를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 ① 소유자 등은 동물을 사육·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동물이 학대·스트레스·갈증·배고픔·영양불량·부상·질병·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 등은 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관리하고 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⑤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등록 및 외출 시 안전조치와 이동장치를 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배설물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동물복지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동물복지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참고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2.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문화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학대를 받은 동물의 구조·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유기동물의 입양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동물보호와 동물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7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동물복지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3.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 4.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性)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위원은 동물보호 관련 업무담당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2.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수의사
3.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5.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
6.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이상으로서 동물보호연구 또는 생명윤리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 단체 또는 기구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 관련 활동경력이 있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동물보호 관련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

축할 수 있으며, 해축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나 위원회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업무 담당공무원 중 구청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대

상동물을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동물의 등록 업무를 동물등록대행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대행자의 선정 기준, 등록수수료의 징수 등 동물등록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등록한 동물의 소유자는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록대상동물의 분실 및 사망 등 시행규칙 제9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 이내에 변경사항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동물보호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실·유기동물의 포획
2. 피학대동물의 구조
3. 포획·구조된 동물의 공고·보호·관리
4. 보호조치하고 있는 동물의 반환 및 처분

③ 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구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④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재지정이 가능하고, 유실·유기동물 발생 두(頭)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동물보호센터장은 반기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관리에 대한 현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동물보호센터 감독)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 보호시설의 지정기준 준수여부와 보호·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 상태를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법 제36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결과 보호·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86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공정한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동물보호센터 지정 대상 기관·단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해당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동물의 구조 및 보호) ①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은 유실·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을 발견하거나 발견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구조 및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이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구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은 유실·유기동물이 법 제34조에 따라 적절한 보호·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에서 보호·관리 중인 유기 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 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동물의 소유자 등에게 제5조에 따라 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에 대해 지도·권고하고 개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유실·유기동물의 반환 등) ① 구청장은 구조한 유실·유기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실·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 요구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실·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할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 제42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40조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유실·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인 유실·유기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분양 및 기증받고자 하는 자의 소유로 등록을 하여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제16조(피학대 동물 보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학대받는 동물을 구조하여 소유자로부터 격리하여 보호할 때에는 수의사의 진단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 하되 3일 이상 소유자로부터 격리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우선 하되,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호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보호 기간에 따른 보호비용을 산정하여 소유자에게 청구하여야 하고, 소유자는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 동안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대 받는 동물의 소유자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하여 해당 동물의 소유권이 구청장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해당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동물보호 민간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⑤ 소유자가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구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에 따라 분양·기증하거나 법 제46조에 따른 인도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7조(동물의 기증 또는 입양 지원) ① 구청장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동물을 기증 또는 분양하는 경우 기증 또는 입양 받는 자에게 마리당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8조(길고양이의 관리) ① 구청장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스럽게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이하 “길고양이”라 한다)의 적정 개체 수 유지를 위하여 중성화 사업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시행을 위해 길고양이를 포획한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해야 한다. 다만, 길고양이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장소를 정하여 방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동물병원, 같은 법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 또는 그 지부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포획·방사 사업의 경우에는 동물보호단체, 민간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위하여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길고양이 급식소 관리·운영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⑥ 길고양이의 포획, 방사, 중성화 수술을 시행하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동물보호단체, 민간사업자 등 수탁자에게 중성화사업에 대해 교육·홍보할 수 있다.

제19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지역사회와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관리·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게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① 구청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업무 관련 사업을 하는 관련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업무 수행과 관련된 교육·홍보·지원 활동 등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1조(반려동물문화 조성 등)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문화센터 및 반려동물놀이터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반려동물일시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반려동물 행동교육 전문 인력을 육성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1항의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증진, 동물친화시설 확충을 위해 대학·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연수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는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침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이하 “유실·유기동물”이라 한다)

나.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이하 “피학대 동물”이라 한다)

3.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제25조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동물학대 방지, 동물복지, 유실·유기동물의 입양 및 동물실험윤리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축산의 확대와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동물학대 방지와 반려동물 운동·휴식시설 등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력·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 3. 21.>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기존 제8조에서 제10조로 이동)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
1.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의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구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21.>
1. 유실·유기동물
 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 ④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21., 2019. 8. 27.>
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

으로 광고·선전하는 행위.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은 제외한다.

3.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4.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건의 대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존 제12조에서 제15조로 이동.>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1.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2.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③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중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실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그 사실을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동물등록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2. 11.>

⑤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사항 및 방법·절차, 변경신고 절차, 동물등록대행자 준수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며,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1.>

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연락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하여야 한다. (기존 제13조에서 제16조로

이동)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③ 시·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실·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4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9조, 제38조의2,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제43조, 제45조 및 제47조에서 같다)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7조에 따라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존 제14조에서 제 34조로 이동)

1. 유실·유기동물

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로부터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②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보호조치 중인 경우에는 그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등록된 동물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 중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③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4. 5., 2017. 3. 21.>

④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도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수의사법

제17조(개설) ① 수의사는 이 법에 따른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다.

② 동물병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아니면 개설할 수 없다.
<개정 2013. 7. 30.>

1. 수의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동물진료법인”이라 한다)
4.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
5.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③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④ 시장·군수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동물병원의 시설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제21조(공수의) ① 시장·군수는 동물진료 업무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는 제3호와 제6호의 업무만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2. 11.>

1. 동물의 진료
2. 동물 질병의 조사·연구
3. 동물 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
4. 동물의 건강진단
5. 동물의 건강증진과 환경위생 관리

6. 그 밖에 동물의 진료에 관하여 시장·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동물진료 업무를 위촉받은 수의사[이하 “공수의(公獸醫)”라 한다]는 시장·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 위촉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동물복지위원회 회의수당(안 제9조)
- 동물등록대행비 (안 제10조)
- 동물보호센터 운영경비(안 제11조)
- 유기·유실·피학대동물 구조 보호비(안 제14조·제15조·제16조)
-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지원비·급식소 설치운영(안 제18조)
- 동물보호업무지원(안 제20조)
- 반려동물 문화 조성(안 제21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사람과 동물의 안전한 공존을 위하여 생명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이며, 조례안에서 규정된 사업은 이미 농림축산식품부와 인천시의 지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대부분으로 구비가 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반려동물 문화센터 및 반려동물놀이터 등은 향후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수립되는 등 필요사항 발생 시 재정지원 검토

작성자 : 연수구의회 이 형은 의원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22 - 19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연수구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과 교육 및 홍보(안 제3조)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안 제4조)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안 제5조)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영지원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안 제6조와 제7조)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판로촉진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4,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의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로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업과 공동사업의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교육과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등)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지역의 다양한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경영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교육훈련 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판로촉진) 구청장은 구와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과 구 소속 공공단체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

제9조(공동사업의 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 및 촉진을 위한 해외전시·판매, 시장개척
4. 그 밖에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 의무) ①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는 그 시설을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이용하려는 때에는 다른 자에 우선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중앙회 회장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발전에 관하여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공동사업 지원(안 제9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편의를 제공하고자 선언적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비용추계는 생략하고, 향후 필요사항 발생 시 재정지원 검토

작성자 : 연수구의회 박 정 수 의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 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를 정의함.(안 제2조)
- 스토킹 범죄예방 및 피해 보호를 위한 시책을 추진토록 함(안 제3조)
-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토록 함(안 제4조)
-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을 명시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 구민을 대상으로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하도록 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4,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스톱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추진사업) 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3. 스토킹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에 관한 사업
4. 스토킹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에 관한 사업
5.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제5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성희롱·성매매·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사법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 카.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 달성을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안 제5조)
-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 교육 (안 제6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 교육은 현재 추진 중인 성희롱·성폭력 등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에 포함하여 진행할 수 있고, 피해자 법률지원의 경우 구 고문변호사 또는 「가정법률 상담소」 등과 연계하는 등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비용추계서는 생략하고, 향후 사업 확대 등으로 필요시 재정지원 검토

작성자 : 연수구의회 최 숙 경 의원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22 - 21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병전우회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을 통해 시민사회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해병전우회 지원 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3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4,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을 통해 시민사회에 기여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병전우회(이하 “전우회”라 한다)”란 해병대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봉사활동”이란 재난·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사업)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주민의 안전과 재산보호 및 해병대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
2. 야간방범 순찰 활동 사업
3. 수상 안전사고 예방 사업

4. 해양과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사업
5.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선도 사업
6. 인천상륙작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교육·홍보 등 관련사업
7. 그 밖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사업

제4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3조(기본방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및 이 법이 정하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지원 대상 사업)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작성자 : 연수구의회 한 성 민 의원